

碩士學位論文

韓國報勳政策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黃 範 澤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 韓國報勳政策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Development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in Korea >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黃 範 澤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 韓國報勳政策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Development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in Korea >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6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黃 範 澤

黃範澤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3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목 차

제 I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 II 장 국가 보훈제도의 이론적 배경 .....	3
제 1 절 국가 보훈제도의 의의 .....	3
제 2 절 국가 보훈제도의 행정 구조상의 특징 .....	5
제 3 절 국가 보훈의 사회정책적 모형 .....	8
제 III 장 국가 보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7
제 1 절 국가유공자의 범위, 자격 및 문제점 .....	17
제 2 절 국가유공자의 보훈 방법 및 문제점 .....	26
제 3 절 국가유공자의 재정 및 문제점 .....	59
제 4 절 국가유공자의 지원행정체제 및 문제점 .....	64
제 IV 장 국가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 .....	73
제 1 절 국가유공자의 범위, 자격의 개선 방안 .....	73

제 2 절 국가유공자의 보훈 방법의 개선 방안 .....	75
제 3 절 국가유공자의 재정 조달의 개선 방안 .....	82
제 4 절 국가유공자의 행정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	84
제 V 장 결 론 .....	86
부 록 .....	90
참 고 문 헌 .....	112
Abstract .....	116

## 표 목 차

〈표Ⅲ- 1〉 '92년도 신체검사 실시현황 .....	23
〈표Ⅲ- 2〉 '92년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	40
〈표Ⅲ- 3〉 일반회계예산 .....	60
〈표Ⅲ- 4〉 기금예산 .....	61
〈표Ⅲ- 5〉 국가보훈처인원 .....	66
〈표Ⅲ- 6〉 한국보훈복지공단인원 .....	67
〈표Ⅲ- 7〉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현황 .....	70
〈표Ⅲ- 8〉 국가유공자현황 .....	71
〈표Ⅳ- 1〉 (주)한성운영실적 .....	83

## 도 목 차

〈도Ⅱ- 1〉 사회정책주기 내에서의 보훈행정 .....	9
〈도Ⅱ- 2〉 선택의 차원 .....	13
〈도Ⅲ- 1〉 국가보훈처 기구표 .....	64
〈도Ⅲ- 2〉 한국보훈복지공단 기구표 .....	66

## 부 록 목 차

1.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90
2.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표 .....	93
3.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95
4.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준용 대상자 .....	98
5. 상이등급 구분표 .....	100
6. '93 보상금 1인당 월지급액 .....	109

# 제 I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총칭하여 국가유공자라고 하며, 이들에 대하여 국가가 물질적, 정신적 보상과 예우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보훈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들 나름대로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sup>1)</sup>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분단되어서 있고 이념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는 어느 국가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당연히 희생하여야 하고 또 국가는 응분의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국내외의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6.25사변으로 희생한 수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재정 관계상 그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공자들의 생계 곤란과 소외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6.25전상 군경들은 삶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거리를 방황하며 구걸하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후 국가보훈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되었으나 아직도 최적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정부와 국가유공자 사이에 충돌이 종종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주화

---

1)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정책, (1988), P. 7.

물결이 몰고 온 각계 각층의 욕구 분출과 국민 1인당 GNP가 6,000불을 넘어선 점등으로 볼 때 복지국가건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보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기금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적용대상자의 시혜 폭을 확대하고 둘째 보훈급여를 현실화하며 셋째, 국가유공자 예우 정착과 보훈조직을 일원화 함으로써 보훈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유공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보훈에 관한 정책, 보훈대상자 선정과정, 보훈방법상의 문제, 보훈재정의 조달방법과 운용, 보훈행정체제상의 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 단 국가유공자의 수혜기간은 1945년 해방으로 부터 1993년 현재의 대상자까지 정했으며, 그 규정의 기준도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외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국가에 대한 공헌이나 안보적 이유로 동 법률에 준용하는자, 즉 월남 귀순용사와 같은 준용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범위에 드는 사람도 모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규범적, 서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 간행물, 주변 논문 등을 중심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계, 지표, 관계 규정 등 국가보훈처가 보유하고 있는 실무자료도 상당 부분 인용하였으며 특히 본인이 국가보훈처근무를 하면서 보훈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 제 Ⅱ 장 국가보훈제도의 이론적 배경

### 제 1 절 국가보훈제도의 의의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한 공훈에 대하여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국가보훈제도에서는 공훈 이외에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답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훈제도의 의의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은 그 대상별로 구분할 때 두 종류의 흐름이 있는 데 그 하나는 국가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 생명, 신체적 희생이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공로가 있는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로 대별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국가공동체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은 국가보훈제도의 근간이되는 법률로서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녀교육보호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령을 통합, 일원화하여 1984년 8월2일 법률 제3742호로 공포하였으며 1985년1월1

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①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②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목적이라고 명문 규정하였다.<sup>2)</sup>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살피고 예우해서 그들의 은공에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일제침략으로 부터 해방된 이후 1950년 정부수립 초기에 “원호”라는 이름 아래 오늘날과 같은 보훈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존속하려면 이를 몸받쳐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모든국민이 언제라도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하겠다는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국과 동시에 보훈제도가 마련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제도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으며 6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시책을 마련하였지만 우선 시급한 구호적 생계지원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보훈시책을 구빈 또는 구휼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예우는 궁극적으로 정신적인 것이지만 예우받아야 할 사람이 생계에 허덕이게 놓아두고는 어떠한 예우도 예우가 될 수 없으며 본인에게 스스로 예우를 받도록 처신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다쳤거나 또는 생활의 지주를 잃어 가난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계안정에 우선 힘을 기울였고 그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적 방법을 차용하였다.

---

2)국가보훈처:국가보훈법령집(1992)

인간은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 까지 안락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이념과 빈곤계층을 방치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된 사회보장정책은 나라를 위하여 한몸을 바쳤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국가와 국민이 의무로서 보살피고 예우해야 하는 보훈제도와는 그 차원이 다르고 근본목적이 다른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러한 뜻에서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예우의 기본이념”을 특별히 명문화하였다. 이 법률 제2조에 있는 “이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임으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sup>3)</sup>

그러므로 국가보훈의 이념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고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귀감이 되도록 하며, 민족정기선양을 통해 국민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국가수호의지를 다지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에 이르는 시책을 펴 나갈 때 진정한 보훈 이념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국가보훈제도의 행정 구조상의 특성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국난을 겪어 왔으며, 국난을 극복하는

3) 국가보훈정책(1988), pp, 9-11

데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보였고 지금까지 그 아픔과 상흔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분들에 대한 대접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으나 당시는 국가 재정의 열악 등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원호업무 관장기구가 다원화되어 있었고 대상이나 지원 내용도 각기 달라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더욱 더 어려웠는데 기관별 관장 업무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건사회부

1950년 4월 시행된 군사원호법에 의해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 토벌 중의 전사자 또는 군 복무 중의 순직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정부 수립 이후 제도화된 군사원호 업무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6.25사변으로 군사원호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51년 7월에 종전의 사회국군사원호과를 원호국으로 승격시키고 이에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를 신설하였으며 3개의 직업보도원과 4개의 정양원 및 중앙재활원을 설치하였고 다시 의정국 산하에 구호병원을 두었다. 또한 폭주하는 지방의 원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 사회과 원호계를 원호과로 승격 분리시켰으나 강력하고 체계화된 원호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 2. 국방부

1951년 8월 국방부 병무국 보건과에 사전계, 교도계를 두고 지방에는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에 원호과를 두어 전사자 유족에 대하여 군인사망급여금, 사망일시금의 지급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한편 육군에서는 군 자체에 1952년 11월 군사원호처를 설치하여 주로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를 실시하면서 동 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종합원호행정기구로 승격 발전시키려 하였으나 보사부 등과의 기능중복으로 1956년 5월에 폐지되었다.

## 3. 내무부

내무부 치안국에 원호계가 설치되어 상이경찰과 전물경찰의 유족에 대한 원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 4. 체신부

모든 군사원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년 1회의 연금 지급업무는 체신부 우정국 군경연금과에서 담당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사람들이나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너무나 미미하였으며 업무체제도 산만하였다. 따라서 직업을 얻지 못한 전상군경들이 거리에서 구걸 행각을 했을 뿐 아니라 전물군경의 노부모들은 양노소로, 나이 어린 유자녀들은 고아원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수 많은 미망인들은 세인들로 부터 소외된 채 어린 자식들과 함께 굶주림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1961.5.16 이후 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군사원호청 설립법을 공포 함으로써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이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보훈사업은 통일된 전담기구를 갖추고 등록, 관리, 지원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구심점이 없이 미약한 지원에 매달려 표류하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고 지난 33년 동안 각종 보훈제도가 획기적인 전망을 보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애국심은 크게 고양시킨 것 등이 국가보훈처 창설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제 3 절 국가보훈의 사회정책적 모형

국가보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우리들은 물론 자손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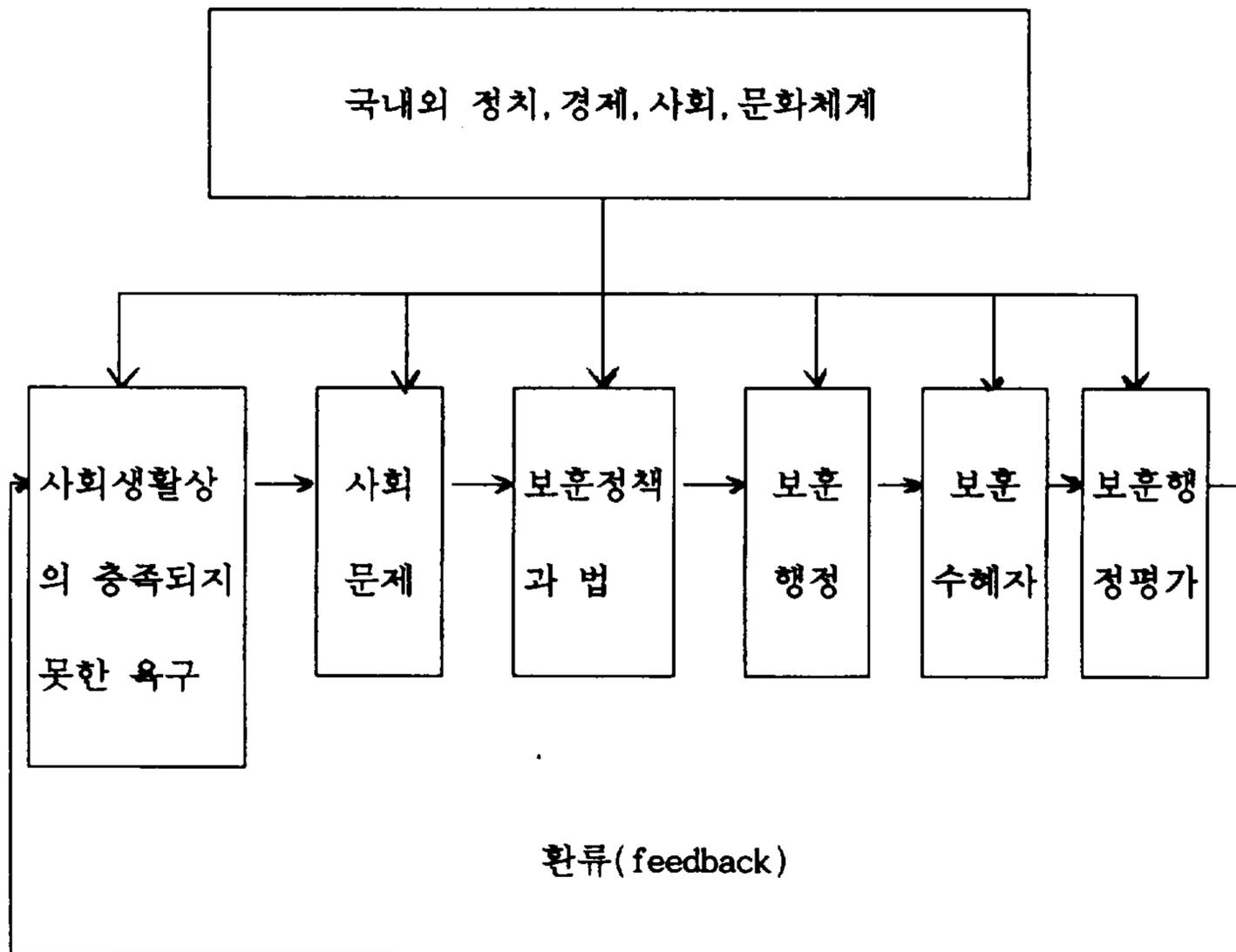
따라서 보훈행정이 하나의 실천방법이건 또는 하나의 이론적 분야이건 간에 결국 목적 또는 목표를 합리적으로 이행하여 궁극적으로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가키는 것이 그 존재가치라 할 것이다. 이때 보훈행정은 그 매개체로서 인간으로 형성된 집단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직

4) 국가보훈처 「보훈30년사」 한국보훈복지공단신생인쇄조합1992, pp185-187.

(Organization), 제도 (Insitution) 또는 기관(Agency)이라고 말한다. 이 조직에는 인간적 자원(Hunan Resources)과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이 동원되어 전문적인 기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충족되지 못한 욕구(Needs)가 존재할 때 개인생활에 개입하여 그 욕구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훈행정의 역할이다. 이처럼 사회생활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보훈행정을 통해 복지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도Ⅱ- 1> 사회정책 주기내에서의 보훈행정



5) 이 도표는 황진수, 현외성 “비교사회정책연구서설(Ⅱ)”, 한성대 논문집 (1985)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복지행정은 사회정책의 전체적인 주기(cycle)내에서 하나의 위치를 점하면서 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기술, 방법 등을 동원 활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사회생활 중에 자기 스스로 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존재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그 문제는 개인문제적 차원에서 사회문제로 변화된다. 물론 개인문제로서의 각종 복지문제가 사회문제로서의 복지문제로 되는데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인간의 의지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거의 노인문제의 질적, 양적팽창 그리고 사회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문제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또한 사회문제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사회정책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단순하고 객관적인 사회문제의 존재만으로 사회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회정책으로 성립되기 위하여 상호경합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지식, 가치관, 사회상황 등이 연결되어 하나의 사회정책이 다른 사회정책에 우선하여 등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추상적 정책의 구체화는 바로 법률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정책에 관련된 법을 사회복지법이라 하며 이는 각종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태적 입장에 선다.

보훈행정은 사회정책과 법의 실현을 위해 형성된다. 보훈행정은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 봉착한 보훈수혜자들에게 보훈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훈행정은 보훈정책 또는 사회정책 법의 전달 기능을 지닌다는 뜻에서 전달체계(delivery System)<sup>7)</sup>이라고도 불리운

6) 앞의 논문 PP. 437 - 442 및 현외성, 한국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을 참조할 것.

7) Neil Gilbert and Harry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Cliffs, New Jersey, 1974. ch5 참조

다.

다음에는 보훈서비스를 보훈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천(Practice)하고 보훈전문가의 활동이 존재하며 이들이 보훈수혜자의 욕구를 어느정도 어떻게 충족시켜 주었는지를 평가, 분석하여 이것을 다시 정책결정자에게 반영시켜(feedback) 보다 나은 국가보훈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역동적으로 계속되는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정책주기라고 부른다.

보훈정책은 첫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훈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차원에서의 접근인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둘째, 보다 나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 혹은 사업을 개발하도록 해주며, 셋째, 새롭게 변동하는 보훈대상자의 요구를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형성될 수 있으며, 넷째, 보훈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한 답변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원래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준거는 구체화된 수치 등과 같은 분석적인 준거와 정책의 결과나 과정같은 규범적인 준거의 두가지 양태를 결합할 때 가장 바람직한 평가결과를 낼 수 있다.<sup>8)</sup>

사회복지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준거들을 제시한 학자는 여럿이 있다. 즉 Paul은 ①행해진 활동의 양을 말하는 노력형, ②노력의 결과인 효과성, ③달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하고<sup>9)</sup> Suchman은 여기에다 ①주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성과의 정도를 평가하는 적법성과 ②노력과 성과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능률성을 첨가한 평가의 준거를 제시하였다.<sup>10)</sup> 또 York는 노력성, 능률성,

8)김석준, "정책의 성장촉진을 위한 통합기준의 모색", 지역사회개발논총, Vol. 3, 1980, p. 61.

9)Benjamin D. Paul, "Social Service in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4th, (November 1956), p. 96.

10)Edward A. Suchman, "Evaluation Research, Principle and Practice" and Practice in Public Science and Social Action Programs, (N. Y. Russell

효과성, 충격효과성, 질, 과정, 공정성, 을 평가기준으로 주장하였다. 11)Prigmore 와 Atherton은 사회복지 정책의 준거틀로서 4가지 부분의 13개 항목을 제시 하고 있다. 12)

1)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 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과 일치하는가 또는 양립하는가
- 나. 그 정책은 평등과 사회정의에 일치하는가
- 다. 그 정책은 사회사업의 가치와 일관성이 있는가
- 라. 그 정책은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2) 영향과 의사결정의 영역과 관련하여

- 가. 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가능성이 있는가
- 나. 그 정책은 합법적인가
- 다. 그 정책은 관련되는 이해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

3) 지식에 관한 영역으로서

- 가. 그 정책은 과학적으로 올바른가
- 나. 그 정책은 합리적인가

4) 비용과 수익에 관한 영역으로서

- 가. 그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나은가
- 나. 그 정책은 현실성이 있는가
- 다. 그 정책은 효율성이 있는가

---

Sage Foundation, 1967), pp. 61-68.

11)Reginald O.York, Human Service Planning,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lolina Press, 1982),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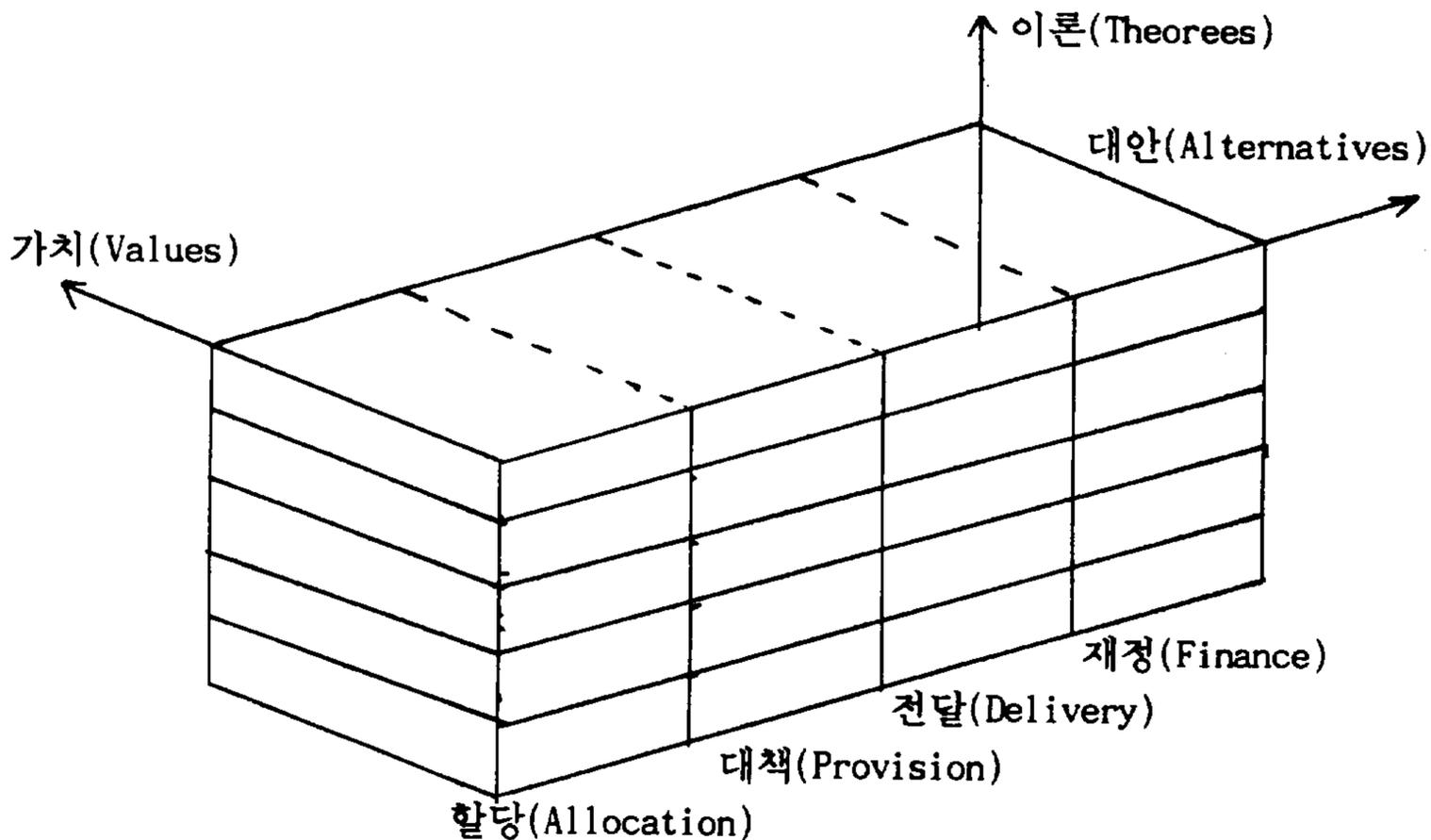
12)Chales S.Prigmore & Chales R.Atherton, Social Welfare Policy(Tormonto:Health and Company, 1979), pp. 63-67.

라. 그 정책은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시장외부에서 일어나는 급여와 할당의 매카니즘이라 규정하면서 사회적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며 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련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이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sup>13)</sup>

Gilbert와 Specht의 평가분석틀을 현존하는 제도와 정책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특히 산출연구(Product)와 성과연구(Performance)의 통합을 통하여 제도와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게 해주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 해주는 장점을 지닌다.

<도 II- 2> 선택의 차원



13) N. Gilbert & H. Specht, op. cit., p. 24.

이것은 4차원의 질문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①사회적할당(Social Allocation)의 기반은 무엇인가 ②할당되어진 사회적 대책 (Social Provision)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이들 급여의 전달(Delivery)의 전략은 무엇인가 ④이들 급여의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가<sup>14)</sup>등이다.

이들 선택차원을 다음의 3축으로 연결하여 더욱 진보된 연구를 할 수 있다. 즉 첫째, 각 차원내에서의 대안 범위, 둘째, 이들 대안을 지지해 주는 사회가치 셋째, 이들 대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 혹은 전제의 축이다.

본 논문에서는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보훈정책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할당영역

할당영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격과 범위에 따른 원칙을 말한다.

국가유공자는 조국광복운동에 공헌한 분을 비롯하여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분 기타 국가를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들로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의거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자녀 및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출가하지 아니한 자,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자부로서 1945년 8.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자녀 및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출가한 자 등을 들 수 있다.

---

14) Ibid. p29.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준용 대상자로 제대군인과 반공포로상이자들도 할당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 2) 대책영역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금전적지원(보상금급여, 교육보호, 직업보도, 주택 및 대부지원), 질병에 대한 지원, 기타지원, 특히 명예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거 50년대에는 빈곤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을 때 보상금지급과 상이처 치료가 주요인이 되었지만 문화적 발전과 영예로운 생활보장 및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길이 보전하기 위해 후손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요즘 앞으로는 명예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민족정기 선양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3) 재정영역

국가보훈처에서는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보상금 연금은 세입세출예산에서 93년도의 경우 5,378억 원으로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보훈기금예산으로는 1,406억 원으로 대부금, 군인보험금, 기금증식사업비,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16억 원으로 각종편찬사업과 애국지사위문 등에 사용되고 있다.

## 4) 전달영역

국가보훈처 산하 5개지방청과 26개지청에서는 처본부에서 보상금자금을 배정받아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금지급은 우체국을 통하여 매월 15일에 계좌입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되시는 유족분들에게 대하여는 대리수령인을 통한 위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제도에 있어서도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5개지방청과 26개지청에서 학자금 자금을 배정받아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각급학교에 자금을 배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교 수업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의 반액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각종 직업보도는 취업을 원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종, 희망근무지, 각종자격여부 등을 참고하여 적재적소의 기업체(6%-9%의무채용)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이 신체기관의 일부인 보철구가 수명년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한국보훈병원 내에 있는 의지창에서 제작하여 주소지 관할지청에 통보되면 주소지 관할지청에서 국가유공자에게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 제 Ⅲ 장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 1 절 국가유공자의 범위, 자격 및 문제점

#### 1. 국가유공자의 범위, 자격

##### 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조국 광복운동에 공헌한 분을 비롯하여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분 기타 국가를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들로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침탈 이후 1945년 8월14일까지 사이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로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둘째, 국토방위를 위해서 희생되었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는 전투에 참가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이 있고 국방 또는 치안임무 수행 중 희생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 있으며, 국방임무 수행 중 뚜렷한 공헌을 하여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재일교포로서 6.25사변에 자진 참전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포함된다.

셋째, 4.19의거에 앞장서 희생된 사람들로 4.19의거 사망자와 4.19의거 상이자가 있다.

넷째, 기타 공무수행 중 상이자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등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부록 1)과 같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부상의 내용에 따라 전몰 또는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 1959.12.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도 그 사망 또는 상이의 내용에 따라 전몰군경, 전상군경으로 본다.
-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민방위 기본법)
-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자(향토예비군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국가보안법)
- 안전기획부의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 1988.12.31 부터 국가유공자를 엄격히 선발하기 위하여 (부록 2)와 같은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과 배제조항을 규정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장난 .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첫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둘째, 자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셋째, 부모

넷째, 성인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부모 등으로 (부록 3)과 같다.

다. 무공 . 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에 대한 보상범위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보상은 그 생활의 정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변동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공훈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 준용대상자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국가에 대한 공헌이나 안보적 이유로써 제대군인등을 들 수 있는데 공헌이 인정되는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보훈행정대상의 본류인 『국가유공자』의 반열에서는 내려오게 되었는데 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준용대상자

는 (부록 4)와 같다.

## 2. 문제점

### 가. 국가유공자

첫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하여는 과거 독립운동을 하려면 은익상태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았고 특히 본명 외에 가명을 많이 사용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시 애로가 많다.

그리고 해외에서 주로 만주, 상해 등 중국방면과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6.25사변후 많은 전상자들이 병상일지 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쟁수행 중 일각을 다루는 시점이라 이해할 수 있으나 추가로 상이처가 확인되었으면 한다.

셋째, 1959. 12. 31이전에 전시 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거증자료를 구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넷째, 1988. 12. 31이전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으로 전상 공상 및 비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각군 본부의 통보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었던 점이다.

### 나. 유족 또는 가족의 구분

첫째, 배우자로서 6.25사변 당시 전선에서 남편 사망으로 빈곤과 질병 등으로 그리고 전통유교문화의 습관에 따라 배우자가 본의 아니게 개가 또는 제적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부의전사, 모의개가 등으로 어린자녀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20세가 되면 성년도달되어 제적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부모로서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을 때에 보상금지급문제이다.

#### 다. 무공, 보국수훈자

첫째, 무공수훈자로서는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정부에서 수여한 자로 각종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훈을 세워 애국정신이 투철한 자로 기 만명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 자원은 풍부하나 각종 지원혜택이 미비하여 등록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보국 수훈자로는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정부에서 수여한 자로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군 발전에 상당한 공헌이 있는 자로 기 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자원은 풍부하나 각종 지원혜택이 미비하여 등록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무공, 보국수훈자들은 등록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후에는 생활실태조사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이 달라지고 있다. 즉 생활이 매우 어려운 자는 취업, 대부, 교육보호,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급되나 생활이 안정된 자는 1가구 1인에 한하여 가점취업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라. 준용대상자

첫째, 제대군인에 대하여 특수한 군 여건하에서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전역하면 사회적응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종 지원혜택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반공포로 상이자로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거나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상이를 입은 자로 대한민국에 연고지가 없으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각종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 마. 자력관리

'92년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표Ⅲ- 1>과 같이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처의 악화 등으로 승급하기 위하여서는 <표Ⅲ- 1>과 같이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점으로 신규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수도 국군병원에 입원시 받은 급수보다 낮은 급수를 받는 수가 있으며, 4,230명 중 2,261명이 등급판정을 받음으로 53%가 유공자로 확정되었다.(표Ⅲ- 1 참조)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에서 받은 등급이 유공자가 판단하여 너무 낮게 판정을 받아 60일 내에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996명 중 349명이 승급하여 35%의 승급율을 보이고 있다.(표Ⅲ- 1 참조)

재확인 신체검사는 등의 판정을 받은 자가 2년 후에 상이처의 정확한 등급을 확정받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말하며 641명 중 297명이 등급판정을 받음으로 46%가 유공자로 확정되었다.(표Ⅲ- 1 참조)

재분류신체검사는 현저한 상이처 악화 등으로 현재의 상이등급 보다는 승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말하며, 수검자 4,395명 중 2,698명이 승급하여 61%의 승급율을 보이고 있다.

(표Ⅲ- 1 참조)

또한 고령(평균 64세)으로 왕성한 활동력이 적은 연령인데다 본래의 상이처로 인하여 더욱 활동력이 저하되는 점과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만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현 제도의 모순성 때문에 6급 1항, 2항의 유공자들이 재분류 신체검사에 무리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6급상이자의 경우

5급상이자와 상대적 차이(연금승계, 보철용 차량, 수송수단 대우 등)로 승급 욕구를 위한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부록 5)와 같이 상이등급 구분표로 분류하고 있다.

〈표Ⅲ- 1〉 '92 신체검사 실시현황

○ 신규신체검사

계	등 급 판 정										등 외
	소계	1 급 1 항	1 급 2 항	1 급 3 항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 항	6 급 2 항	
4,230	2,261	15	9	25	44	124	36	190	260	1558	1,969

○ 재심신체검사

수검후	수검전	계	등 급 판 정							무 변 동	
			소계	1 급 3 항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 항		6 급 2 항
계		996	349	2	3	7	4	9	24	300	647
2 급		2	1	1							1
3 급		11	3	3							8
4 급		2	1		1						1
5 급		6	2		1	1					4

6급 1항	5	2					2			3
6급 2항	33	13	1		2	2	3	5		20
등외	937	327			3	1	4	19	300	610

○ 재확인신체검사

계	등 급 판 정							무변동
	소 계	2 급	3 급	4 급	5 급	6급 1항	6급 2항	
641	297	1	2	1	8	20	265	344

○ 재분류신체검사

구분	수 검 대상	수 검 인원	승 급 자									무변동	미수 검
			계	1-1	1-2	1-3	2급	3급	4급	5 급	6급 1항		
계	4,732	4,395	2,698	4	11	23	175	173	408	1323	581	1697	337
1급	1항												
	2항	3	2	1	1							1	1
	3항	23	20	12	3	9						8	3
2 급	100	84	19			19						65	16
3 급	544	496	177		1	3	173					319	48

4 급	271	250	96				1	95				154	21
5 급	1,122	1,040	434				1	65	368			606	82
6급	1항	1,154	1,099	755		1	1	7	22	724		344	55
	2항	1,515	1,404	1,204				6	18	599	581	200	111

자료 : 국가보훈처 「신체검사 통계표」 1993.

## 제 2 절 국가유공자의 보훈 방법 및 문제점

### 1. 보훈방법

#### 가. 금전적 지원

##### 1) 보상금 급여

##### 가)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자

###### (1) 기본연금

기본 연금은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4.19의거 상이자와 특별 공로 상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과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의거 사망자 및 특별 공로 순직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은의 뜻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은 동법 제5조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배우자, 자녀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그리고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손자녀는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호주상속자인 손자녀에 한하며,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을 제외한 경우의 자녀는 미성년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2) 부가연금

부가연금은 기본연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부가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93년도의 경우 매월 7천원 부터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 (3) 생활조정 수당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10등급 이하자에게 3인이하의 가족에게 월 42,000원, 4인 이상의 가족에게는 월63,000원을 지급하며 일정 기준 소득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산지원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다.

#### (4) 간호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1급,2급 해당자에게 차등을 두어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5) 보철구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이를 제작하여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 (6) 사망 일시금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우동에관한 법률 제13조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고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며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미지급된 보상금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7) 월남귀순용사보상금

귀순한 월남귀순용사에게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신분과 정보제공의 정도에 따라 1급 내지 5급의 등급을 정하여 정착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귀순 당시 휴대한 장비 또는 재화의 유형과 그 가액에 따라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8) 군인 사망보상금 등

군인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항공근무 중 사망한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경우에는 보수 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대원의 사망자에게는 중사 최저 호봉 보수월액의 12배를 사망급여금으로, 상이자의 경우에는 1급은 보수월액의 12배, 2급 - 5급은 보수월액의 8배, 6급은 보수월액의 6배를 상이급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2) 교육보호

#### 가) 제도 개요

첫째, 지원대상은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

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의거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와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제매 등이 있고 월남귀순자 및 반공포로 상이자와 그 자녀 그리고 장기 복무 전역하사관 자녀 등도 지원 대상이다.

둘째, 지원내용으로는 중, 고등학교 취학관리로써 입학관리와 전학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비지원에는 공납금면제, 학자금지급,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 전역하사관 자녀 중.고 수업료 보조, 보훈장학금 지급 등이 있다.

셋째, 지원근거에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및 동법시행령이 있고, 교육부령으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 나) 취학관리

첫째, 입학관리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는 일반 자녀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시험, 추천 배정하고 있으나 입학원서 제출시 관할 보훈관서를 경위하며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받아 출신학교에 제출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입학원서를 보훈관서에서 일괄 접수하여 교육보호 대상자임을 확인한 지원자 명단과 함께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입학고사는 서울 등 18개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일반자녀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하고, 기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지원학교별로 응시하고 있다.

대학에 있어서는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경쟁입시에 의하고 있으며, 다만 합격 후, 국가유공자자녀증명을 해당학교에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로서 공납금면제혜택을 받고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둘째, 전학관리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바, 전학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청 또는 학교소정의 전학원서에 주소변경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전출학교 관할보훈관서를 경유하여 전입학교 관할보훈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전입학교 관할보훈관서에서는 당해 연도의 교육보호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교육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장과 협의하여 전학시키고 있다.

#### 다) 교육비 지원제도

##### (1) 공납금 면제

교육보호사업에 있어서 공납금 면제는 가장 중요한 시혜 중 하나로 중·고·대학까지의 공납금을 면제하고 있다.

공납금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순국,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자녀 및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손자녀와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 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공납금면제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에 한하며, 실험실습비, 학생회비, 자율적경비 등은 학생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공납금면제를 받으려면 합격통지서나 재학증명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고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학재학자녀 중 직전학기 평균성적 미만이거나, 학교장 또는 보훈처장이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공납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 (2) 학자금 지급

학자금은 재학 중 소요되는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에 충당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은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국,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 및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손자녀와 미성년 제매이다. 학자금은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지급하거나 계좌입금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2회 분할 지급하는 바, 1학기 학자금은 4월15일부터 2학기 학자금은 10월1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규교육보호 대상자나 학기도중 재학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자의 학자금은 등록신청 또는 보상 신청이나 확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되 지나간 학년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3) 사립대 공납금 국가보조

현재 국.공.사립 등 모든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공납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설명한 바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 공납금의 면제로 인한 사학재단 측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납금 면제액의 1/2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있다.

### (4) 전역하사관 자녀 중.고 수업료 보조

군에서 20년이상 장기복무후 1981.4.4이후 전역한 하사관으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 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보조하고 있는 바, 매 학년 초 대상자로 부터 수업료보조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에게 일괄보조하고 있다. 다만, 전역하사관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중 혜택이 불가능하다.

### (5) 보훈장학금 지급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성적우수자녀들의 사기진작과

면학심 고취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간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본인은 대학원 재학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는 국내 대학원 장학과 해외유학(대학원)장학으로 구분하여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3) 직업보도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업보도 사업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국가보훈사업중 중추적인 사업의 하나로 성장 발전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예산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기업체 그리고 보훈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더욱 보람있는 사업인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6항에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sup>15)</sup>

이 사업의 특징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장알선과는 달리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까지 법으로 정한 보훈대상자를 총 고용인원중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고,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체 및 고용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를

---

15) 오세경, 「대법전」, 서울: 법전출판사, 1992.

비롯하여 이 시험에 의하여 취업된 보훈대상자가 기업체내에서 임금,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토록 하고 퇴직시까지 엄격히 사후 관리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이를 이행키 위한 수단으로는 위반시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행정명령 뿐만 아니라 전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행정지도와 모든 국가, 지방자치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5.16혁명 초기 단계에는 직업보도 사업의 근거법인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과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직업보도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많은 군관계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또한 국, 공영기업체의 임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 때에는 상이군경들이 단순한 평직원 뿐만 아니라 간부요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공무원 또는 국, 공영기업체의 직원채용방법이 공개경쟁채용보다는 특별채용이었던 데 그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은 상이군경들이 직장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 처의 직업보도시책이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환경 또는 직업보도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여건 중의 하나였다.

본격적인 직업보도시책은 전국의 상이군경들과 전몰군경의 처 유자녀를 중심으로 직업알선을 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적절한 기능습득을 위해 원호원 직업보도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당시 직업보도소 수료생은 수료와 동시에 고용명령서를 발부하여 취업시켜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이자, 전몰군경처나 유자녀의 취업보다는 상이자의 자녀 중심으로 취업대상이 바뀌었고, 직장알선 이전에 실시하는 직업훈련도 그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의 한 분야로서 실시해 오던 직업훈련제도가

바뀔에 따라 일반공공직업훈련원이나 사설직업 훈련원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취업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저임금자의 임금인상과 근무조건 개선, 보직, 승진 등에서의 차별대우시정, 취업자 설문조사 실시, 취업자 간담회 개최, 모범취업자 포상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4) 주택 및 대부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주택대부 등을 실시하다가 1982년에는 긴급,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 대부를 신설함으로써 생업지원 대부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주택지원은 무주택대상자가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근래엔 이를 확대하여 주택개량 대부 및 전세대부 그리고 아파트 희망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물량확보 후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하여 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업 및 주택지원사업의 효과적 성과를 거두고 지원대부원금 및 이자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채권관리사업도 아울러 실시함으로써 대부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 나. 질병에 대한 지원

##### 1) 의료보호

국가를 수호하다 부상을 입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은 세계 각국 공히 국가의 기본 의무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6.25를 겪으면서 많은 인원이 전상을 입었음에도 처 창설 이전에는 국가제정이 취약하여 희생에 상응한 보상은 물론 상처에 대한 치료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상이군경에 대한 가료업무는 1953년 2월 23일 설립된 보건사회부 산하 대구병원에서 담당하다가 1957년에 구로구 궁동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여 이를 구호병원으로 개칭하고 여기서 담당하였다. 또한 전국 11개소에 정양원이 있었으나 이들 기관은 시설 장비의 부족 계획성없는 운영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상이군경에 대한 의료보호는 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상처 또는 재발된 상이처를 치료하는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응급가료, 위탁가료, 통원가료, 자가치료의 제도를 도입, 가료방법을 체계화하였고, 상이처에 적합한 보철구를 제작 지급하고 척추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대회 파견으로 상이자의 자립자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공단 산하에서 서울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데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국비가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종전에는 상이처만을 국비가료하였으나 1980년이후부터는 1,2급중상이자의 상이처의 병발질환과 애국지사 훈장자의 일반질환을 1985년 이후부터는 3급 상이자와 애국지사 표창자의 모든 질환을 가료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정책이 제도화되었다.

1978년이후부터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공립병원에서의 진료 이외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중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보건사회부와 협조, 1종 의료보호대상자의 25%에 달하는 4만 가구 16만 명에게 1종 의료 보호증(황색진료증)을 발급하여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하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보철구 지급에 있어서는 보철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의지제작기구를 선진국에 연수토록 하여 의지제작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신체에 장애가 있는 지방거주국가유공자들이 의족수 등의 취형장착을 위해 서울병원의지창까지 오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지역외 4개 지방보훈청 소재지에 의지분창을 설치하여 가까운 곳에서 의족 등 보철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이군경의 신체기능회화방지와 재활의욕고취를 위해 재활체육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장애인재활체육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각종 국제대회에도 참가 좋은 성적으로 입상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세계장애인기구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국민소득향상으로 자가용승용차 보급율이 높아지고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교통은 더욱 복잡해져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상이자는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이자가 승용차량을 구입, 운행할 경우 각종 세금과 사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활동영역을 넓혀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활동 범위를 원활히 하고 있다.

#### 다. 기타 지원

##### 1) 용사촌 지원

6.25사변 후 전상군경의 진료와 정양을 위하여 각 군병원과 전국 11개소의 정양원에서 상이군경들을 수용 보호하였으나 사실상 진료나 정양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생활 방편으로 7 -8 년씩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퇴원을 거부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므로써 신규 발생자의 진료 및 정양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1961년도 군에서 전역과 동시에 강제 귀향토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 적응이 어려워 상호의지하며 상부 창조하고자 스스로 집단 마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공유지 등에 주택을 건립하여 이주 정착토록 지원하였다.

1967년 부터 정부에서는 이들 집단 마을에 대하여 복지공장운영 차량과 보조원을 지원하는 등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일부 경상이자들이 수혜를 목적으로 집단촌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처음에는 20여개이던 집단촌이 나중에는 46개 집단촌으로 늘어 나는 등 난립하였으며 각종 이권 사업을 집단의 힘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1971.1.1 부터 집단촌을 2급 이상 중 상이자 및 미망인 만으로 구성토록 하여 24개 집단촌으로 정비하였다.<sup>16)</sup>

1974년 국무총리훈령 제121호(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를 제정하여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1985. 9. 30 부터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93. 3. 31 현재 전국에 대방동 재할 용사촌을 비롯하여 26개 용사촌에서 복지공장 등을 운영하여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2) 자립 및 생활 편익지원

- 재해구조: 주택 전파시 100만원의 지원과 위로를 함으로 빠른 시일내에 생활을 복구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 인. 허가지원: 초기에는 연초소매상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개인 택시사업면허 취득에 대한 지원이 주종을 이루어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향상

16) 국가보훈처 「보훈30년사」 1992, p467.

되었다.

- 국,공영 수송 시설 이용으로 애국지사 및 상이군경에게 철도무임승차권을 연간 1인 6매(추가 6매)발급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50% 할인하여 주므로 국가유공자들의 편의 시설을 돌보고 있다.

- 민간교통시설 할인 이용으로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및 해운조합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상이군경 등이 민간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 고궁, 공원 등의 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애국지사 및 상이1급자의 보호인 1인도 고궁에 입장할 수 있다.

- 병역법상의 혜택으로는 전몰,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 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자녀형제중 1인에 한하여 6개월 보충역 편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서 생활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 T.V 방송 수신료 면제로는 애국지사 및 상이군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증서를 복사하여 동사무소 창구에 제출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 시내통화료 감면으로는 애국지사 및 상이군경들이 국가유공자증서를 복사하여 통신공사에 제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 3)제대군인 지원

군의 특수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어 장기복무로 인한 사회적응력이 결여되며 청년이 조기 도래하여 생계 대책이 긴급하므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책이 절실하므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각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년이상 장기복무 전역후 하사관증 생계가 곤란한 자 및 그 자녀 1인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며 또한 중,고등학교 공납금중 수업료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어 전역 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62.3.1이후 중사 이상으로 전역한 자를 대상으로 농토 구입, 사업자금, 주택구입, 주택임차 대부를 실시하여 하루 속히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4) 생활실태조사

생활실태조사는 장. 단기 보훈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과 각 사업별 우선 지원 대상자 결정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유공자 전원을 조사한 때는 74년, 76년, 79년, 88년의 4회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해는 부분 별로 실시하였다.

생계 곤란 가구의 비율은 '74년도에는 33%, '76년도에는 20.9%, '80년도에는 5.0%, '86년도에는 4.7%, '92년도에는 2.4%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상금의 획기적인 인상과 국가유공자들 스스로와 근면 자조 협동의 기치 아래 잘 살아 보자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Ⅲ-2>

신규 등록자 이의 제기자 및 생활여건 변동자 등은 연중 수시 조사하며 생계곤란자는 매년 9 - 10월 중에 조사하여 다음해에 생계곤란자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93년도의 경우 <표Ⅲ- 2> '92년 소득계층 등급 기준표에 의거 3인 이하 가구는 42,000원 4인 이상 가구는 63,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원의 구성실태, 소득 및 재산정도, 각종지원 희망사항을 파악하며 92년도 부터는 별도로 표본 조사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므로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파악하고 있다.

생활실태 조사자료 활용 실태는

- 생활조정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자료
- 무공보국 수훈자 보상 기준 결정자료

- 장기복무 전역 하사관 교육 보호 대상자 결정자료
- 의료 보호증 발급 대상자 결정자료
- 주택임차 임대아파트 우선순위 결정자료
- 생업지원 대부 우선순위 결정자료
- 국가유공자 모범자녀 장학지원 결정자료
- 국가유공자 사회지표 및 장.단기 보훈정책 결정자료 등을 들 수 있다.

92년도에 실태 조사 가구는 21,500가구로 신규등록자 3,400가구 표본 조사자 2,500가구(전대상자의 1.5%), 여건변동, 저소득자 15,600가구로 전국 각지의 보훈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표Ⅲ- 2〉 '92년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 시행기간 92.9.1 - 93.8.31 ) (금액단위:천원)

소득 계층	가 족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소득등등 (가계비 대비)	(60%)	(70%)	(85%)	(100%)	(118%)	(134%)	(144%)
상	1 (250% 이상)	1,555	1,813	2,202	2,590	3,055	4,470	3,730
	총							
중	2 (200% 이상)	1,244	1,450	1,762	2,072	2,444	2,776	2,984
	총							
중	3 (150% 이상)	933	1,088	1,322	1,554	1,833	2,082	2,238
	총							
중	4 (125% 이상)	776	906	1,101	1,295	1,528	1,735	1,865
	총							

	5 (100% 이상)	622	725	881	1,036	1,222	1,388	1,492
하   총	6 (89% 이상)	554	645	785	922	1,088	1,235	1,328
	7 (78% 이상)	485	566	687	868	953	1,083	1,164
	8 (67% 이상)	417	486	590	694	819	930	1,000
	9 (56% 이상)	349	406	494	581	685	778	836
생  계  곤  란	10 (45% 이상)	280	326	396	466	550	625	671
	11 (34% 이상)	212	247	300	352	415	472	507
	12 (34% 미만)	212	247	300	352	415	472	507

\* 1. '92년 소득계층 등급별 분류기준

- '92년 도시근로자 가계비 추계자료(기본 생계비, 평균가계비)

2. 가족수별 비율분포 근거

- 도시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가구)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2. 4.

(자료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지침 1992, p. 59)

## 라. 민족정기 선양사업(명예 및 지위)

민족정기선양사업은 독립운동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을 통하여 그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정신으로 승화함과 아울러 국토분단과 이념의 갈등으로 심화된 남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민족의 공동체 의식과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요 보훈시책이다.

### 1)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정기 선양사업

#### (가) 독립유공자 발굴, 서훈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전후로 부터 1945년 8월14일 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신명을 바쳐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위훈을 기림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의식을 제고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서훈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포상에 있어서 1949년 부터 1976년 까지는 총무처 주관으로 558명을 포상하였으며 1977년도 부터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건국훈장에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이 있으며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나)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보급

우리는 일제 침략의 질곡 속에서도 의병들의 구국항쟁, 실력양성을 통한 애국계몽운동, 3.1운동에 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국내외에서 끈질기게 전개함으로써 끝까지 민족자존의 길을 잃지 않았던 애국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

다. 이에 독립유공자 포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굴된 사료와 해외 사료 및 생존 독립유공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운동 관련 문헌을 편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하여 전후 젊은 세대로 하여금 애국선열의 위훈과 국난극복의 산교훈을 우리의 민족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한편 올바른 독립운동사를 정립하고 해외동포들에 대하여는 민족자존의식 및 민족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문헌의 발간, 보급에 힘쓰고 있다.

#### 다)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지원

북한의 왜곡된 독립운동사의 실상을 규명하여 국난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기반조성에 기여코자 학술회의를 지원해 오고 있다.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외 저명한 학자들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상이한 남북의 시각을 연구, 발표하고 비판함으로써 올바른 민족사관을 재정립코자 국내를 비롯 중국, 소련, 미주지역 등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학술회의는 내고장을 빛낸 독립운동가의 활동상과 지역별 항일독립투쟁사를 중심으로 오늘의 우리다짐과 우리 민족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코자 지역별로 언론기관, 지방문화원, 학회, 연구기관 등의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라) 독립기념행사 및 승모사업지원

일제에 의하여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고자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1운동, 독립군, 의열투쟁, 광복군, 학생운동 등에 참여하여 구국항일투쟁을 전개한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숭고한 독립정신을 애국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독립기념행사와 승모사업이 광복이후 지속되어 왔다.

2.8독립선언 기념식 등 독립기념행사, 순국선열추모 대제전 등 추모행사, 안중근의사의거 기념식 등 개인별 기념행사 및 3.1독립운동 기념탑이나 선열의 동상 등 조형물의 건립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선열의 열과 역사적 현장이 재조명되어 후세에 길이 전승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역사적 고증을 비롯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마) 해외안장선열 유해봉환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고자 중국, 소련, 일본, 미주지역 등지에서 헌신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유해가 조국광복이 된 후에도 환국치 못하고 이역땅에 돌보는 이 없이 외롭게 방치되어 있어 선열들의 묘소를 조사하여 국내에 유해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그 충의로운 위훈을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후세에 계승하여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안장선열의 유해봉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바) 해외독립운동사료 수집계획

국내외에서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사료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민족독립운동을 실증적으로 연구, 평가하며 민족자존의식을 고양하고 올바른 독립운동사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숨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심사자료로 활용키 위해 일본 등 아주지역을 비롯 유럽, 미주지역 등지에 미공개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각종자료를 수집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2) 보훈행사

#### 가) 현충일

6월6일 현충일은 범정부적인 추모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온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온 국민으로 하여금 현충일에 국기를 반기로 게양하고 음주, 가무를 삼가하고 경건한 하루를 보내도록 언론매체,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계몽하고 있으며, 6월6일 10시 사이렌 취명에 맞추어 하던 일을 멈추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분간 묵념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의 참배유족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증차하였으며 당일 유족(동반가족 1인포함)은 시내버스, 지하철 및 전철을 무임 승차토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묘역참배 유족 등을 위해 공중전화를 가설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며, 구급차량의 배치와 급수시설준비 및 급수차량배치, 미아보호소와 임시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 해마다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현충일을 전후하여 4일간 독립기념관, 국립박물관, 고궁 등을 보훈대상자들에게 무료 공개하고 있으며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조회시간 및 윤리, 역사시간에 호국정신의 함양과 보훈의식고취 등의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충일 2-3일 전에는 국립묘지 및 대전 국립묘지, 4.19묘역 등 61,000여기의 묘전에 꽃꽂이 및 소형 태극기의 장식과 전국 각 시군 충혼탑, 기념물 등의 주변을 정화하는 등 생동감있는 현장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각 방송국과 신문사에서도 추념식 실황을 중계하거나 특집 기획보도 등을 통해 국민권침탈시 민족의 수난과 6.25참상을 되새겨 온 국민에게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의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 나) 호국, 보훈의 달 행사

정부에서는 매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각종 포상과 위로, 격려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온 국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건전하고 질서있는 민주시민사회를 구현하고 올바른 통일안보의지와 애국정신을 함양키 위한 각종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국, 보훈의 달 기간 중 실시되는 주요 추진사업은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포상과 위로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보훈대상자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의 애국정신선양을 위한 각종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보훈대상자의 수범활동을 전개하여 예우받는 국가유공자상을 정립하고 있다.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정부포상, 국무위원포상, 보훈대상, 지방자치단체장포상, 장한어머니상, 효자효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비쁘신 가운데에도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국보훈대상 수상자 및 국가유공자단체간부 등을 청와대로 초대하여 위로 및 격려함으로써 대국민 보훈의식 고취는 물론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함양시켜 통일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의 사명의식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를 조성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정부포상자 등 모범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

오찬(만찬)을 함께 하면서 위로, 격려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오고 있다.

각 군부대에서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군부대로 초청하여 군장병들의 장기자랑, 사열, 시범훈련 등을 통해 역전의 용사들에게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토방위의 간성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지켜오고 있음을 소개하여 민, 관, 군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다.

보훈대상자가 취업하여 근무 중인 기업체에서는 취업보훈대상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 유급휴가의 실시, 격려금, 기념품지급, 위로간담회 개최, 모범취업자에 대한 표창수여 등을 통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오고 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호국정신을 앙양시키고자 대국민홍보활동을 강화해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의 설정 정의를 알리고 전국민이 이에 적극 동참토록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가보훈시책을 소개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온갖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자립 성공한 사례들을 소재로한 특집 보도물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홍보활동 등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내용으로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 뉴스, 사설, 특집기획물, 담화, 드라마, 현지르포, 광고물 등이 있으며, 선전매체를 통한 내용으로는 선전탑, 현판, 현수막, 입간판 등 가두장식물의 설치와 포어, 포스타 부착과 반상회 회보,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이용 및 애국정신선양활동을 통한 홍보활동 등이 증점 추진되어 왔다. 또한 종교계에서는 호국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이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순국

선열과 전몰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회, 미사회, 위령제 등 특별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1977년에는 전공상보훈대상자들이 한국전상용사 복음선교회를 결성하여 서울, 부산, 광주 등의 지역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녕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해 오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애국조회 및 역사, 윤리시간에 호국정신의 함양과 보훈의식의 고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대전국립묘지 및 각 시·군 충혼탑에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꽃꽂이 및 소형태극기를 장식하고 있으며 보훈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 지원하는 가운데 현충탑, 충혼탑, 사당, 묘역 등의 진입로 정비, 주변환경정화 등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국 보훈관서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호국의지를 고취시켜 투철한 국가관을 배양하여 장차 국가의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코자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호국정신양양 학생옹변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 다) 4.19의거 기념행사

1960. 4. 19 자유당정권의 장기 독재와 부정부패 등의 불의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회복한 역사적 의거를 기념하고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는 한편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자 정부기념일로 제정추진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1961년 서울시 주관으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를 주빈으로 4.19희생자 유족 및 상이자와 의거참가자 및 학생,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후 1962년부터 1973년까지는 서울시의 주관으로 국립예술극장에서 부총리 주재하에 거

행하였으며 1974년 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국립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육내행사로 거행하여 왔다. 기념식은 식순에 의하여 경건하고 진지하게 거행됨으로써 4.19의거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의의를 재조명하는 계기 마련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4.19의거에 참가하여 희생되신 영령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가 매년 4월18일 저녁에 4.19공원 묘지 내 유영 봉안소에서 4.19의거 희생자유족회의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다.

4.19관련 3개 단체(4.19의거 상이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4.19회) 주관으로 단체회원이 모여 4.19당시를 회상하고 4.19의거의 이념과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위안의 밤 행사를 갖고 있다.

#### 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1919년 4월13일은 대한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선열들이 일제의 침략으로 상실된 국권을 되찾자 하는 온 겨레의 열망을 한데 모아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선포하였던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온 국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 3) 나라사랑운동 전개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상실된 국권회복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사변이 일어난지 40년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 때의 참상이 국민의 기억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 특히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국난을 미체험한 젊은 세대들은 한낱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나라의 소중함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에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애국선열의 위훈을 기리고 금세기 우리 민족사에 통일 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1991년 부터 「나라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와 같은 나라사랑운동을 통해서 암울했던 일제 36년사와 그 처참했던 6.25의 참상을 되새기고 조국 수호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 용사들의 위훈과 호국정신을 전후 세대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나라의 표상인 태극기의 사랑과 겨레의 꽃인 무궁화사랑, 그리고 우리 고장 및 우리 학교출신 국가유공자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4) 기타 예우시책

민족정기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의 충의로운 유지를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여 국난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세대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조국통일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각종 예우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한 예우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국민 애국정신의 선양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및 6.25 등 국난극복에 직접 참여하였던 국가유공자들의 순회강연을 통한 애국정신 선양활동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조성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

하여 각종 행사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와 국가유공자에게 기장 및 증서수여

셋째,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한 방안으로 영구용 태극기증정, 국립묘지안장, 이장지원 및 묘비제작지원, 지방산재 묘소단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2. 문제점

### 가. 금전적지원

#### 1) 보상급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서 연금(보상금)을 받는 자는 92.12. 현재 전 대상자의 65%인 116,323명에 이르고 있으며 온라인 계좌 입금지급(92%)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sup>17)</sup>

.보상금 지급 확정제도의 이원화(우체국 온라인 지급제도, 시중일반은행 송금 지급제도) 및 확정 시점의 차이(우체국 전월 25일까지 확정, 시중일반은행 7,8일경 확정)로 이중 확정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 보상금 확정담당자의 착오로 이중 확정되었을 경우 발견하기가 어려우며 현행 보상금 지급사항 전산화 면에서는 이중으로 지급된 보상금 지급액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우체국 지급 또는 일반은행 송금지급)지급분만 기록되어 지급사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 보상금확정 사항이 우체국 지급분과 일반은행 송금 지급분으로 각각 개별적이어서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이중확정할 위험성을 배제하기가 곤란한

---

17)보훈연수원 「보훈실무과정」 1993, p. 5

실정이다.

(사례) 상군1급 홍길동

- '91.6월 00청에서 00지청 전입

전입당시 계좌 입금 신청서 제출하고 전입전 00청에서 국민은행 송금 지급자였음

- '91.7월 보상금 확정시 확정담당자 착오로 이중 확정하였음.

(우체국 온라인 지급, 국민은행 송금 지급)

- '92.5월 까지 계속 이중으로 지급됨.

- '92.5월 홍길동 000지청 전출

- '92.6월 보상금지급 차이액 규명시 이중 지급 사실 발견 및 과오 불처리

- '92.9월 과오불 전액 회수

## 2) 교육보호

가) 인문계 고교용시자로서 일반학생합격선 미만자 중 최하위 10%를 입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진도에 맞춰 이해하고 발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자녀 대학원 장학대상으로 공학계열 전공자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인 자만 대상이 되므로 이학, 농학계열의 자녀 대학원생들도 장학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3) 직업보도

가) 61년도 부터 92년 까지 취업알선 264,246명, 직업훈련 23,688명으로 287,934명을 지원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수입과 함께 국가유공자

생활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나 일부 취업자는 자기의 취업처에 만족하지 않고 퇴직 취업 등(단기근무퇴직)을 수회하므로 취업처로 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다.

나) 보훈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부족(홍보부족)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일방적 행정처분(고용명령)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이 증가되고 있음.

다) 취업보호실시 대상기관에 일상적으로 16인 이상 고용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 추진이 부적격한 업체다수 관리로 행정력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라) 본인의 노력과 적성에 과분한 직종요구로 기업체와 행정관청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마) 국가유공자(유족)자녀의 취업보호 연령이 35세 이하로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자녀들이 취업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바) 취업보호실시기관 관리에서 인사권이 본사에 있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지)청에서 관장하고 있어 중.소도시 관할지청에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

사)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은 가급적 명령취업을 지양하고 가점 또는 자력 취업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명령이나 가점시혜의 회수제한으로 의존 자세 불식이 필요하다.<sup>18)</sup>

#### 4) 주택 및 대부지원

○ 92년말 현재 174,441가구 중 유주택자는 141,437가구(81.1%)이고 무주택자는 33,004가구(18.9%)로 97년 까지는 주택 보급율을 95%로 개선할 예

18) 박진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직장 부적응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45.

정이다.

○ 65년 부터 92년말 까지 주택지원 가구수는 단독주택 25,319가구 아파트 27,543가구, 임차 16,989가구, 주택개량 624가구로 70,475가구를 지원하였다<sup>19)</sup>

○ 62년 부터 92년말 까지 생업자금 대부분은 농토구입 43,812명, 사업 52,916명, 생활안정 38951명으로 135,679명을 지원하였다.<sup>20)</sup>

○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알선하였으나 현생활거주지와 맞지 않는다고 (서울거주자가 인천, 수원, 의정부)수회 포기하는 경우에 주택지원업무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다.

○ 농토구입대부금으로 1,000만원으로 곳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500명 - 약700명 구입하는데 대부금액이 부족한 편이다.

○ 장기적으로는 대부재산증명서 발급의 타당성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 사업대부시 부동산담보를 제공해야 되므로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자는 사업 대부 혜택이 어려운 실정이다.

## 나. 질병에 대한 지원

### 1) 의료보호

가) 보훈병원의 총 병상수가 1,280병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및 입원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적기에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례가 많다.

나) 대한민국 국위선양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파월용사들의 진료에 대하여 많은 개인부담이 되고 있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 연노한 무의탁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무의탁 소년소녀 유자녀들이 재가복지서비스제도가 제정되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절실한

19)국가보훈처 국가보훈 1991, p.61

20)국가보훈처 국가보훈 1991, p.62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라) 보철용차량특별소비세 면세에 있어 상이 2급대상자도 사실상 보호자가 있어야 될 실정으로 상,하지계통상이자만 면세대상은 불합리하다.

마) 정양시설이 없어 정양을 요하는 대상자들이 애로가 많다.

다. 기타지원

### 1) 용사촌지원

가) 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 지정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18개 용사촌복지공장 생산품 : 양말 등 122개 품목

나) 복지공장 물량확보 및 수주지원에 있어 기관단체,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2) 자립 및 생활편익 지원

가) 국가유공자 증서나 상이군경 회원증으로 지하철구간은 무임승차할 수 있으나 국철구간(신도림에서 수원, 인천, 안산, 창동에서 의정부)은 무임승차가 어려워 일상생활에 애로가 많다.

### 3) 제대군인지원

가) 제대군인 대부지원에서 농토구입 5,905명,사업 28,821명,주택 5,800명,생활안정 1,660명으로 42,186명을 지원하였으나 농토구입 사업대부 지원금이 1,000만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나) 10년 이상 복무 전역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취업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체와의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 65세 이상인 자로서 6.25사변시 군복무하고 전역한 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의료수가의 30% 감면혜택이 있으나 이용자가 적다.

라) 제대군인이 관료화 내지 준군대화되어 성역을 이루고 있으며,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관행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 4) 생활실태조사

가)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지 방문시 본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고의적인 은폐의 경우 조사의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핵가족화, 본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자녀들이 분가 별거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장남의 경우, 일시 별거 처리 소득산정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전혀 없으며, 구조적 생계가 곤란한 가구임에도 지원 불가능한 가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다) 차남 이하 별거 또는 분가 직계가족의 소득이 04등급 이상으로 수권자인 부모보다 높을 경우 별거 또는 분가자의 생활 등급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불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라) 본인이 보훈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이사, 전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현지 방문해도 찾을 수 없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라. 민족정기선양 사업

1) 독립유공자 발굴에 있어서 초창기에 지하활동이 많아, 많은 분들이 가명을 사용하였기에 각종 문헌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2)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포상실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91년도에는 중국연변대학에서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나 각종 토론회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편이었다.

4) 46년부터 91년까지 해외안장선열 유해봉환은 윤봉길 의사 등 20위의

유해를 국내에 봉환한 바 있으나 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유해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행히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져 앞으로는 유해 발굴이 예전보다는 용이해질 것 같으나 유족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5) 해외독립운동사자료 수집자료는 신문기사, 서신, 사진, 유고, 유품, 외교문서, 일제의 식민정치, 부속자료, 행정기록, 선언문, 회고록 등과 광복 이후에 발간된 독립운동관련 문헌, 논문 등을 수집할 계획이나 포상신청을 준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말을 빌리면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며 특히 경찰청에 의뢰하는 지문조회는 개인이 신청하면 접수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6) 현충일은 매년 6월6일로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며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1989.12.30. 대통령령 제12876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8항(1990.11.5 대통령령 제13155호)으로 6월6일(현충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부 국민들은 공휴일이 라고 하는 이유로 등산, 야유회 등의 행사를 가지는데 국민 모두가 경건한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7)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T.V, 라디오, 영상매체는 물론 대형아취, 기념탑, 입간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였다. 현정부에서는 건축재정으로 실시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정책을 실시하므로 제반 조형물 건립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8) 4.19의거 기념행사에 있어서는 제33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대통령으로

서는 처음으로 4.19묘소를 참배하고 4.19공원 내 유영봉안소를 개축하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하고 4.19도서관도 장소를 이전하여서라도 확장하여 4.19정신이념에 입각하여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현정부는 4.19의 거룩한 구국충정의 희생정신을 국정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4.19의거가 문민정부시대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재조명되어 역사에 재조명되었으면 한다.

9)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이 세운 민주 공화국의 효시로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건국정신의 원천임을 명시하였고 당시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일제의 국권침탈의 질곡 속에서도 민족정기를 지켜온 모든 국민들의 상징적인 대표기관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정부에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범 국민적 행사가 되도록 1989년 12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제정하고 제71주년이 되는 1990년부터 정부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4월13일에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국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10) 태극기 사랑운동은 국경일 및 정부 기념일의 계기행사로 실시하되 일반가정은 국경일, 한글날, 1월1일, 국군의 날, 현충일(조기계양), 국장기간(조기계양), 기타 정부가 따로 정하는 날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학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서의 호응도가 낮은 편이다.

11) 무궁화 사랑운동은 식목일을 계기로 국민식수기간 중에 증점 보급하고 올바른 식수방법을 계몽, 지도하며 옥림주간(11월 첫째주)에 시비와 가지

치기 등 중점 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궁화 사랑운동은 전 국민에 보급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12) 기타 예우에 대한 시책으로는 6.25 등 국난극복에 직접 참여하였던 국가유공자들의 순회강연에서 연사들이 청중 대상인 중.고교생들의 의식 수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발표해야 하는데 (10대와 60대 연령에 의한 세대 차이) 본인의 실전담만을 강조하여 발표하므로 학생들은 실증을 느끼고 있다.

13)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풍토조성으로 각종 행사시에 의전상 예우가 실시되지 못한 상태이며 예산부족으로 일부 유공자에게만 기장이 수여되고 증서가 수여되고 있다.

14)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한 방안으로 영구용 태극기증정, 국립묘지안장, 이장지원 및 묘비제작지원, 지방산재묘소 단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 제 3 절 국가유공자의 재정 및 문제점

#### 1. 국가유공자의 재정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7,676억원으로 세출예산 6,254억원과 기금예산 1,422억원으로 되어 있다.

##### 가.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 6,217억원과 재정투자용자 특별회계예산 37억원으로 6,25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일반회계	-	6,217억원	
- 보상금	:	5,378억원	(87%)
- 학자금	:	146억원	
- 의료비	:	348억원	
- 행정비 등	:	345억원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군인보험료)	-	37억원	

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사업개요」 1993, p.12

이중 '93년도 보상금 예산규모는 국가보훈예산 6,217억원의 87%인 5,37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93 정부예산 38조 5백억원의 1.4%로써 단일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어느 사업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세출예산으로 국가유공자에게 '93보상금 1인당 월 지급액은 (부록6)과같다.

#### 나. 기금예산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의 기본원칙의 제약으로 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성을 가지고자 세입세출 예산외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것으로 '93년도 국가보훈처 내의 기금에

산은 보훈기금 1,406억원과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16억원으로 1,422  
 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

〈표Ⅲ- 4〉 기 금 예 산

○ 보훈기금	-	1,406억원
- 대 부 금	:	680억원
- 군인보험금	:	123억원
- 기금증식사업비	:	291억원
- 복지사업비	:	312억원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	16억원

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사업개요」 1993, p.12

1) 보훈기금

- 보훈기금법 제6조에 의거 대부지원자금, 복지사업자금, 군인보험자금, 대  
 간첩작전보상 대책지원자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으로 각각 구분 계  
 리하고 있으며 자금별 조성재원 및 지출용도는 다음과 같다.

자 금 별	조 성 재 원	지 출 용 도
대 부 지 원 자 금	.대부 원리금 .기부성금 및 재산 .기금증식사업수익금등 과실금	.유공자 대부금 .기타 복지지원사업비 .기금 증식 사업비
복 지 사 업 자 금	.공단전입금	.보훈공단복지 사업비

		(공단법 제6조)
군인보험자금	. 군인보험료 . 대부원리금	. 군인보험금 . 제대군인 대부금
대간첩작전보상 대책지원자금	. 대간첩작전성금	. 대간첩작전보상지원비
대한민국재향 군인회 사업자금	. 기부성금, 재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 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4조의 2)
공 통 사 항		.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 및 반환금 . 자금운용에 필요한 부수 경비

자료 : 보훈연수원 「보훈실무과정(직무교재 2)」 1993, p. 77

## 2)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원화자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실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법 제4조)

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부조금의

지급: 주택자금, 농업자금의 대부

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와 손자녀의 장학금 지급

다) 독립기념사업

라)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족의

##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상사업

### 2. 문제점

가. 세출예산에서 보상금으로 5,378억원(87%)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의 증대에 보상금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93국가보훈예산은 6,217억원으로 '93정부예산 38조 5백억원의 1.4%에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복지사업비로 많은 부분을 국가재정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93년도 기본연금으로 282,2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92소득계층등급표상으로는 가계비 대비 45%로 생계곤란자로 기본연금은 최소한 10% 이상 인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가연금으로 전상수당 월 7천원, 미망인 수당 월 8천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 또한 적당한 선에서 인상해 주었으면 한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가족이 최소한 생계유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기금예산으로는 보훈기금 1,406억원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6억원으로 1,422억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들의 재정지원을 뒷바침하고 있다. 특히 출자회사인 (주)한성, 창훈실업(주), (주)태흥유업 등이 있어 많은 이익금을 공단에 출자하고 있다.

그리고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소재 88골프장은 약 90만평에 36홀 규모로써 '84년부터 '88년 사이에 345억원을 투입건설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이미 1,35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대부사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원권의 추가모집 등을 통해 200억원의 기금을 더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문민정부에서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많은 자제를 요구하므로 목표달성에는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 4 절 국가유공자의 지원행정체제 및 문제점

### 1. 국가유공자의 지원행정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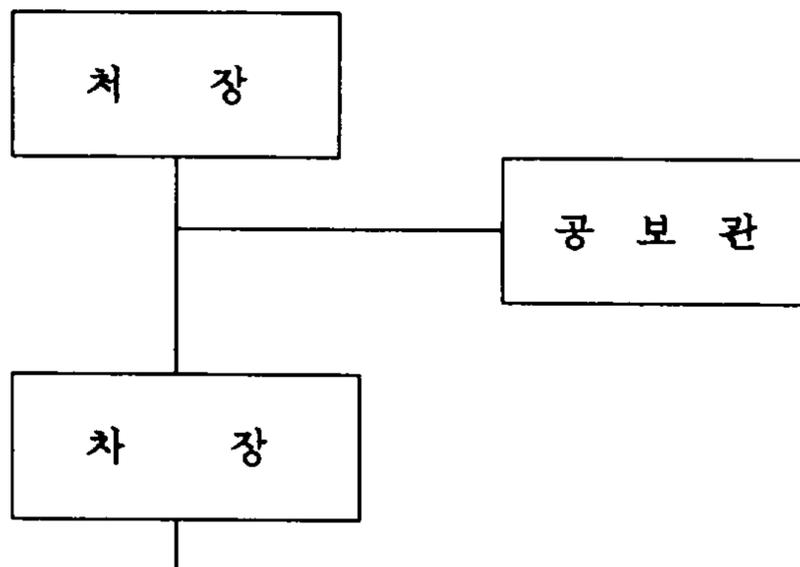
#### 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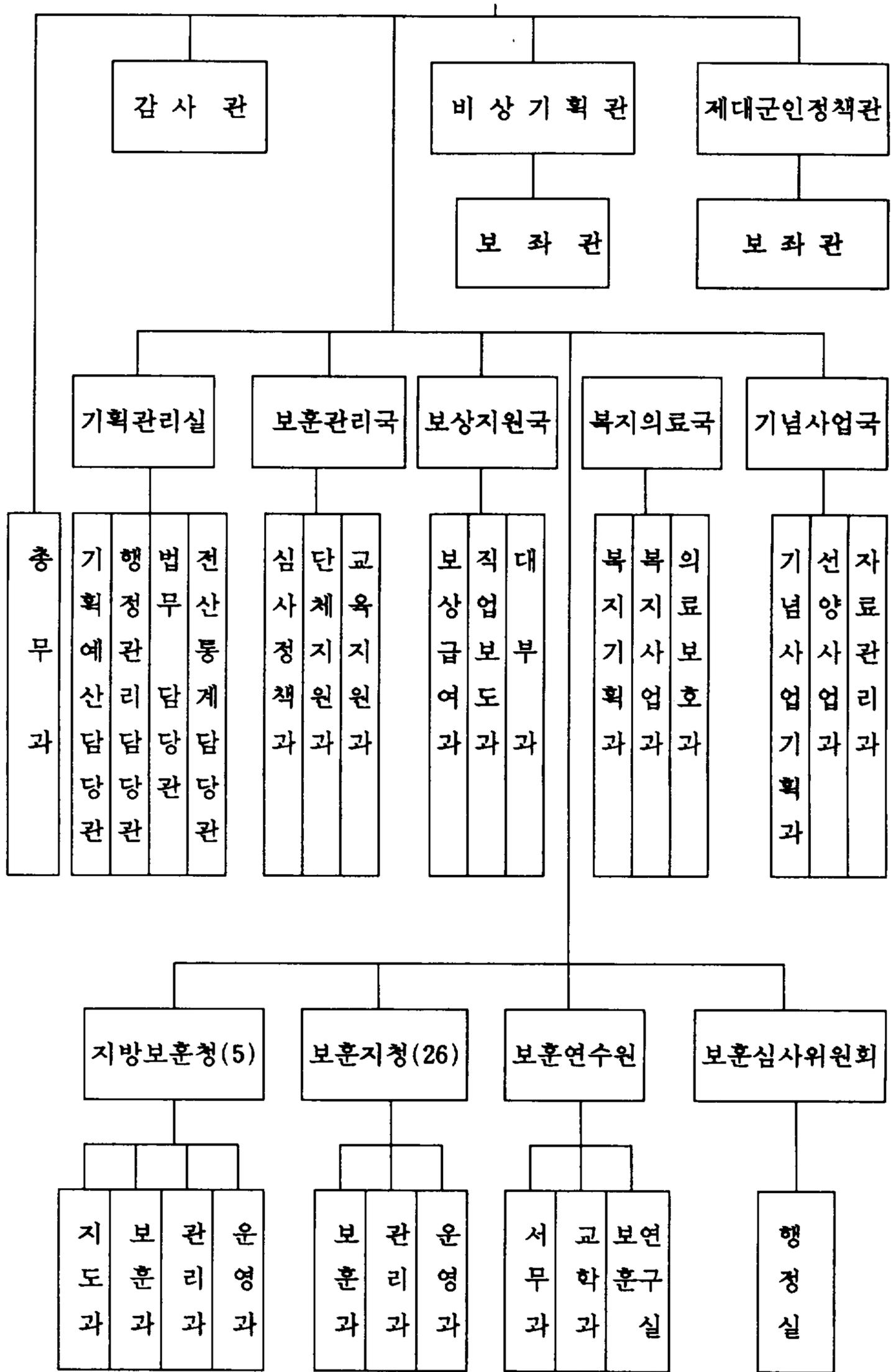
국가보훈조직에는 국가보훈처와 산하에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있으며 국가보훈처 하부조직은 5개 지방보훈청, 26개 보훈지청, 보훈연수원, 보훈심사위원회가 있다. 기구는 <도Ⅲ- 1>와 같다.

한국보훈복지공단 조직은 6개 분야 사업소와 산하에 4개 공장, 그리고 4개 보훈병원을 갖추고 있다. 기구는 <도Ⅲ- 2>와 같다.

<도Ⅲ- 1>                      국 가 보 훈 처 기 구 표

실	국	과	담당관		소속 기관	위 원 회
			2급	4급		
1	4	14	4	4	32	1





자료 : 총무처, 「정부기구도표 (1993)」,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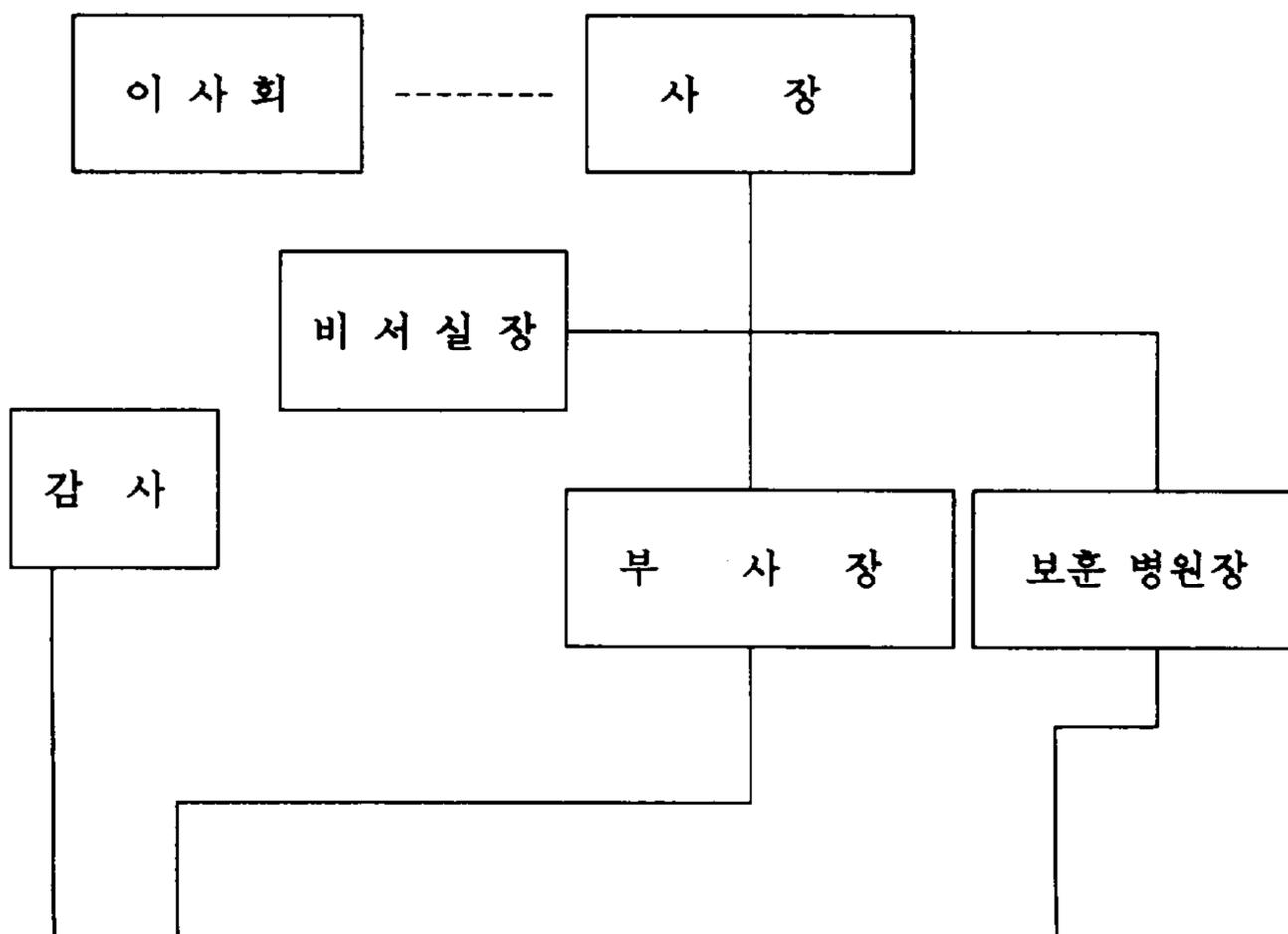
1993. 3.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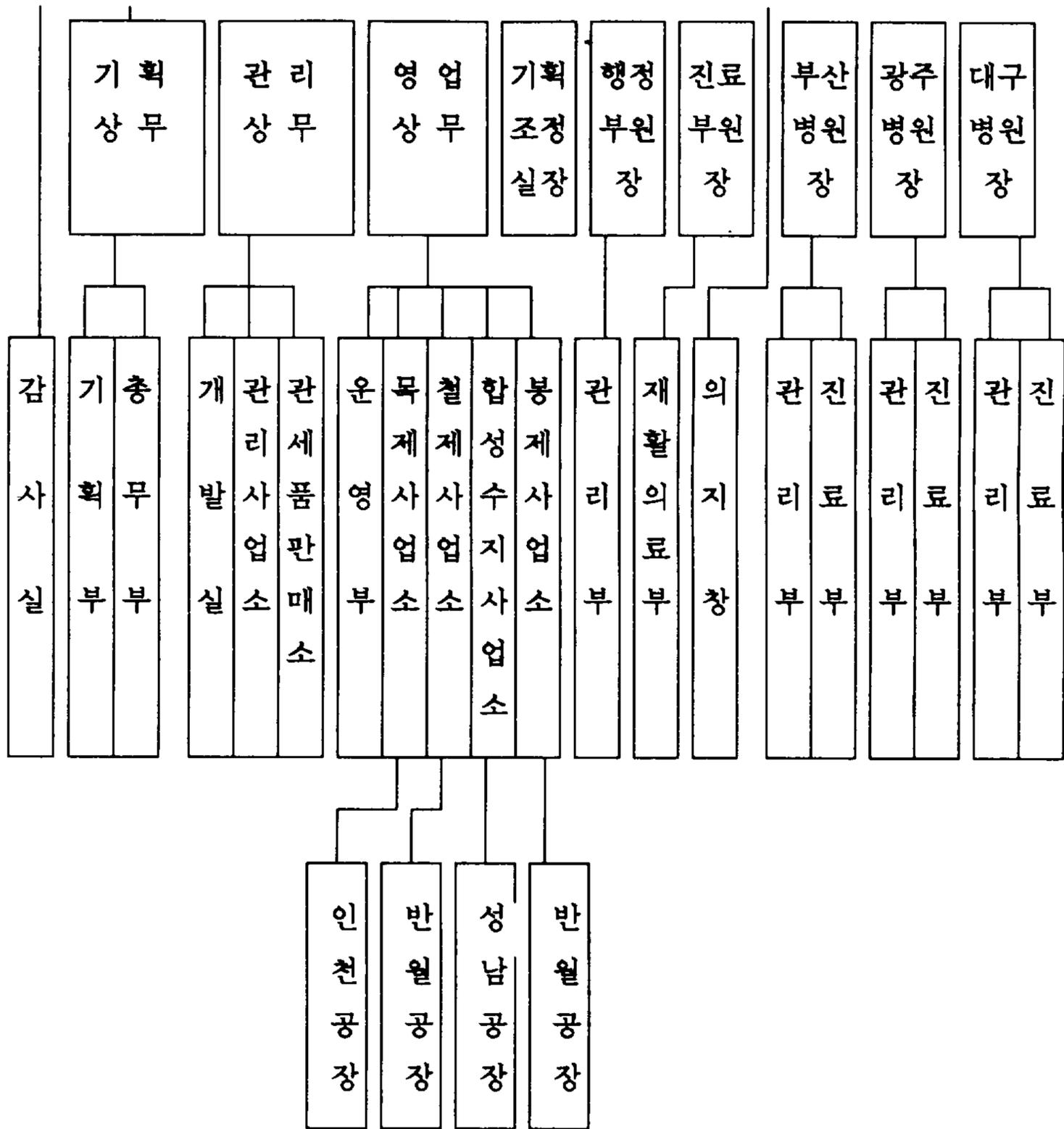
기관별 직급별	처 본 부	지 방 보 훈 관 서	보 훈 연 수 원	보훈 심사 위 원 회	총 계
계	236	1,194	84	18	1,532
정 무 직	2				2
별 정 직	3			4	7
일 반 직	145	827	47	10	1,029
기 능 직	86	367	37	4	494

자료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배정표」 1993.

<도Ⅲ- 2>

한국보훈복지공단기구표





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30년사 (1992)」, p. 622

<표Ⅲ- 6>

한국보훈복지공단인원

=====

1993. 3. 31 현재

직급별	계	임원	별정직	사무직	기술직	의료직	기능 고용직	생산 기능직
인원	2,582	4	9	296	35	830	834	574

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30년사(1992)」, p. 623

## 나. 운 영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제대군인 및 월남귀순 용사의 보상, 보호, 군인보험, 재향군인회, 기타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는 각종 수익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국가유공자 진료와 직업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출자회사로 (주)한성, 창훈실업(주), (주)태흥유통에서 각종 사업에 전념하여 많은 이익금을 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 2. 문제점

### 가 . 국가보훈처

1) 전국 180,267가구가 31개 지(방)청에 산재해 있으며 서울남부보훈지청 관내에 18,221가구가 거주하여 함양보훈지청 관내 1,370가구의 거주에 비해 13.3배의 거주율을 나타내고 있다.

2) 보훈공무원 수로는 서울남부보훈지청이 65명으로 함양지청 19명에 비해 3.4배이다.

3) 이농현상에 따라 농어촌 관내 지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구는 줄어들고 대도시 지청관내에 거주하는 대상가구는 확대될 전망이다.

4) 직원들의 승진에 대하여 승진소요 최저 연수보다 월등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5) 승진 소요연수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부처(총무처, 경제기획원, 재무부)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들 수 있고 젊은 엘리트들이 할애 요청 형식으로 다른 부처로 진출 등을 하고 있어 업무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다.

6) 내무부산하 지방공무원(읍, 면사무소 계장직급이 지방6급)에 대하여 보훈지청계장 직급이 국가7급으로 보훈업무 등 제반협조관서에 애로점이 많다.

7) 기능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등급이 상승될 수 있도록 행정담당관실 조직파트와 인사담당은 총무처 조직담당직원과 유대관계를 갖고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자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년간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보훈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력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음) 지청 자체업무 형편상 비공식적으로 자력담당자가 직업보도업무, 교도업무, 보철구업무, 부속실업무에 임하는 예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인사내규를 단위기관장 재량에 따라 보직 최저기간(1년)이 지나면 업무를 바꿀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면 한다.

9) 한 업무에 장기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나 공무원의 자질면에서 부족한 면을 볼 수 있다. 한 업무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업무를 교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한 나무의 중요성만 알지 전체 삼림의 환경과 조경 등을 폭 넓게 이해하는 면이 부족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훈처 전체 업무를 이해하는데 부족한 면을 보일 수 있다.

10) 사무용품 기기의 부족 및 노후화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렵다.

15,000가구의 자력지청에도 복사기 1대, 1,500가구의 자력지청에도 복사기 1대로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많은 업무에 복사기 등 사무기기가 노후화될

수 있어 시급히 교체 요망된다.

11) 2000년대 통일을 대비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93년도에 재향군인회 업무가 국방부에서 우리 처에 이관되어 업무분장은 물론 앞으로 업무 성격상 국립묘지 안장관리업무도 우리 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한국보훈복지공단

1) 보훈복지공단내 관리직 인사들의 상당수가 외부에서 영입되어 자체내 승진이 어려워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2) 복지공단내 행정관리들과 기술관리전문분야 관리들의 의견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

3) 임원 대기 환자들의 누증으로 병상확충을 들 수 있으며 외래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의료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표Ⅲ- 7> 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현황

국가보훈처

87.9.5현재

구 분		승진 인원	소 요 연 수 (개인별합산분)	평균소요연수	비 고(승진 소요최저연수)
4급->3급	85년도	0	0	0	5년
	86년도	4	43년 1월	10년 9월	
	87년도	1	6년 11월	6년 11월	
5급->4급	85년도	6	60년 10월	10년 2월	5년
	86년도	3	30년 9월	10년 3월	
	87년도	8	80년 7월	10년 1월	

6급->5급	85년도	5	36년 9월	7년 4월	4년
	86년도	0	0	0	
	87년도	6	43년 8월	7년 3월	
7급->6급	85년도	12	116년 10월	9년 9월	3년
	86년도	10	99년 10월	10년 0월	
	87년도	18	197년 5월	11년 0월	
8급->7급	85년도	11	80년 6월	7년 4월	3년
	86년도	12	80년 10월	6년 9월	
	87년도	19	152년 3월	8년 0월	
9급->8급	85년도	16	98년 6월	6년 2월	2년
	86년도	14	92년 5월	6년 7월	
	87년도	26	175년 2월	6년 9월	

자료 : 국가보훈처 「인사관계철」 1987

<표Ⅲ- 8>

국가유공자 현황

1993. 3. 31 현재

구분	국가유공자 수	공무원수	구분	국가유공자수	공무원수
총 계	180,267	1,194			
서울	13,705	86	부여	1,603	20
남부	18,221	65	홍성	1,916	21
북부	14,678	58	청주	3,473	30

수 원	11,503	54	충 주	2,202	22
인 천	9,845	44	대 구	13,213	80
의 정 부	5,331	32	김 천	1,896	22
춘 천	4,002	30	상 주	1,532	20
강 룡	3,720	28	안 동	3,284	29
부 산	13,991	83	경 주	5,234	34
울 산	3,228	26	광 주	7,208	68
마 산	7,312	42	순 천	4,247	33
진 주	3,329	29	강 진	2,088	22
함 양	1,370	19	목 포	2,525	24
제 주	3,555	29	전 주	4,428	35
대 전	4,771	52	이 리	4,512	34
천 안	2,345	23			

자료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1993

## 제 IV 장 국가보훈제도의 개선방향

### 제 1 절 국가유공자의 범위, 자격의 개선방향

#### 1. 국가유공자

첫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하여 은익상태에서 독립운동에 여념이 없으신 점은 감안하여 폭 넓은 자료(지문장조회, 도시, 군, 향토자료지, 각급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자료 등)를 인용하여 주고 범 국민적으로 해외자료를 여러 방안을 통하여 수소문하고 해외출장 등으로 자료를 확인한다. 특히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사회계열로 전향하신 분들도 2000년대 통일을 대비하여 많은 분들을 독립운동가로서의 포상대상자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6.25사변시 전상자 중에는 병상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되어 제대한 후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40여년이 지난 요즈음 신체의 노쇠와 더불어 전쟁상이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므로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병적증명서와 인우보증서 등으로 완화하여 상이처를 인정해 주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셋째, 전시 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청년단원, 향토예비군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자나 상이를 입은 자의 거증자료가 어렵다 하더라도 당시 증인만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면 한다.

## 2. 유족 또는 가족의 구분

첫째, 배우자로서 전통유교문화의 습관에 따라 본의 아니게 개가 또는 제적된 자는 시가복귀 권리부활자로 구제되고 있다.

둘째, 자녀로서 20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되어 제적되었으나 현재는 수권유 자녀로 연금지급만 제외되고 모든 혜택은 일반유족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셋째,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을 때 생존 당시 부양은 같이 한분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 3. 무공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는 과거 군에서 전투에 참가 또는 군발전에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사회에 복귀하여 각계각층에서 증견 인물로 문민정부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할 때 선진국대열에 가일층 앞장 설 것이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회원들이 단합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완수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 4. 준용대상자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군생활로 사회에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반공포로상이자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취업알선, 대부, 교육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5. 신규신체검사자 중에는 가능한한 수도권국군병원에 입원시 받은 급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재분류 신체검사에 있어서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 통보자나 상이처 악화 또는 상이처 변경자, 상이등급 변경이 확실시 되는 자는 보훈(지)

청장 및 보훈병원장이 직권 실시 승인하며 보훈병원 상이처 가료신청자는 보훈병원장이 자력보유(지)청장한테 가료신청자의 원상병명과 상이급 호수를 통보 받아 재분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 승인하고 재분류 신체검사는 매분기 1회씩 실시한다.

기대효과를 제한함으로써 재분류 신청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해소와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분류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키며, 직권 실시에 따라 신체검사 공정성 및 신체검사장 주변 상존 부조리 제거가 가능하며, 행정력 및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6. 국립묘지령 제 23조(안장대상) 제1항 제6조 규정에 의거 예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를 안장 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사경을 헤메고 전투에 임하다 부상당한 유공자들에게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유공자들을 물론 국민들에게도 호국의식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등 군제대 후 사회에서 파렴치범들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 제 2 절 국가유공자의 보훈방법 개선방안

### 1. 금전적 지원

#### 가. 보상금 급여

보상금확정 사항이 우체국 지급분과 일반은행 송금 지급분이 각기 개별적이어서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이중 확정할 위험성을 배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상금 확정 전산프로그램망(우체국분, 은행분)의 연결 및 검색 기능 구비해야 할 것이다.

보상금 확정 전산프로그램이 우체국 분과 은행 송금분으로 따로 구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조치해야 할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보상금이 이중으로 확정되어 지급되는 것을 보상금 담당자의 책임이라 하겠으나 이중 확정 의 과실성 및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오 불 발견시까지는 상당한 시간 및 발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보상금 확정 전산프로그램의 연결로 보상금 지급에 효율과 적정을 기하고 보상금 사고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나. 교육보호

고교진학개선으로 인문계 고교 응시자로서 일반학생 합격선 미만자중 최하위 10% 입학대상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불합격자는 실업계 고교에 응시하므로 일찍 부터 훌륭한 산업역군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자녀 대학원 장학 대상으로 공학계열전공자만 대상이었으나 이학, 농학 계열의 자녀 대학원생들도 직전학기 평균 성적 85점 이상인 자도 장학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 다. 직업보도

일부 국가유공자 가운데는 단기근무퇴직을 수회하므로 취업처로 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며 국가유공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단기근무퇴직자는 취업권을 정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년 미만 근무퇴직자는 142명에 6개월간 취업권을 정지하고 1년 미만 근무퇴직자 15명은 1년간 취업권을 정지하고 있다. 고용명령제도를 폐지하고 가점취업만 실시하므로 국가유공자들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취업보호실시 대상기관에 일상적으로 16인 이상 고용업체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을 60인 이상 업체로 상향조정하였으면 한다.

연금수급권이 없는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자녀에 한하여 55세까지 1회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해 주므로 사실상 생계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인사권이 본사에 있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지)청에서 관장하고 있어 중.소도시 관할지청에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었으나 지방거주자 연고지 취업강화를 위해 소재지 관할지청에서 각각 관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1가구 3인의 명령 취업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주택 및 대부지원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알선하였으나 현생활거주지와 맞지 않는다고 수회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아파트 상담카드를 비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포기 시는 기관 실정에 따른 당해 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한다.

농토대부구입자금으로 현행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농현상의 방지를 위함과 농촌에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 정도의 농토구입대부금을 인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부재산은 목적 재산으로 1,000만원의 대부를 받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대부재산으로 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등재해야 한다.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2000년대 통일을 대비하여 시정되기 바란다.

사업대부시에도 담보제도를 실시하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도록 하

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임직원들도 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도록 연대 보증인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질병에 대한 지원

### 가. 의료보호

보훈병원의 총 병상수가 1,280병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및 입원에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적기에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대구보훈병원을 신축하고, 부산보훈병원을 증축하며 대전 보훈병원을 건립하여 병상수가 2,000병상 이상은 되어야만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에 관한 처리 요령에 대하여 93.3.10 법률이 공포되고 93.5.11부터 시행되었는데 1964.7.18부터 1973.3.23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 후유증 관련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와 이미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육군본부나 해군본부에 신청하여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결정되면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판결받은 자는 상이처에 한하여 국가에서 무료진료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무의탁소년 소녀 유자녀들을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지역재가 복지 서비스센터와 연계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철용차량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을 상이 2급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할 보철구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기술을 제휴하며 철구랏지, 싹스 등을 최신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활체육은 제27회 국내대회와 제41회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할 수 있도록 맹활약 중에 있으며 해마다 국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후원해 주었으면 한다.

### 3. 기타지원

가. 영세 용사촌 복지공장은 국고보조금 및 보훈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복지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겠으며,

용사촌복지 공장의 원자재 확보와 제품의 판로 및 기타 생산활동에 있어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증서나 상이군경회원증으로 지하철 구간은 무임승차할 수 있으나 시계 외 구간은 무임승차가 어려워 국가유공자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 제대군인 대부지원에 있어서도 대부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1,500만원 정도의 대부금은 지원되어야만 소규모사업이라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 65세 이상자로 6.25사변시 군복무 후 전역한 자에 대한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의료수가의 30% 감면혜택이 있으나 유가족과 같이 60% 감면혜택을 받아 노후생활보장이 되기를 바란다.

제대군인이 관료화 내지 준군대화되어 성역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가지 비민주적인 관행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는 바 경선제에 따른 향군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 마. 생활실태조사

근로가능연령으로 국민연금가입연령(18세 - 60세)해당자가 1인 이상있는 가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료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장남의 경우 일방적인 소득산정을 지양하고 최근 주민등록상 5년 이상 별거시 소득산정을 배제해야 하며, 차남 이하 별거 또는 분가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일방적 고등급을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하고 수권자의 생활이 극히 곤궁할 경우에만 고등급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본인들에 대하여 주소변경시 의무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토록 하며, 제출하지 않고 무단전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색인부 열람 및 경찰청에 주민조회의뢰 추적 파악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 4. 민족정기 선양사업

가. 독립유공자 발굴에 있어 초창기에 지하활동이 많아 많은 분들이 가명을 사용하셨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족보, 사료집, 각종 향토지, 종교기관에서 발행 자료로도 심사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나. 본의아니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되어 있는 자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게도 포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해외에서 국제학술 토론회에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을 토의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일 것이다.

라. 해외안장 선열유해 봉환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매년 세출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배정받아야 한다. 상해임시정부요인(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김인전, 안태국지사)의 유해를 하루 속히 본국으로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하겠다.

마.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경찰청에 의뢰하는 지문조회는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바. 6월6일 현충일은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일부 물지각한 국민들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등산, 야유회 등으로 고성방가 하는데 이를 삼가해야 되겠다.

사.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형아취, 기념탑 등의 홍보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입간판 등과 T.V자막 선전만 하여도 홍보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아. 4.19의거 기념행사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알차고 뜻 깊은 행사가 되어 먼저 가신 영령들의 구국충정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민주정치를 이루어 나가기 바란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13일로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차. 태극기 사랑운동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카. 무궁화 사랑운동은 전 국민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각종 행사시 카네이션 등의 꽃대신 무궁화를 사용하여 보는 것도 국민보급운동의 일환이 될 것이다.

타. 6.25 등 국난극복에 직접 참여하였던 국가유공자들의 순회 강연은 중.

고교생들의 의식 수준을 감안하여 발표하시든가 혹은 VTR로 대신하여도 학생들이 6.25에 대한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파.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는 읍, 면, 국민학교 등 단위기관의 행사에서 부터 예우가 실시되고 국가유공자기장은 예산부족으로 일부 유공자에게 기장이 수여되고 있어 하루 빨리 전체유공자에게 수여되어야 할 것이다.

1993년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유공자 증서를 드리게 됨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와 지위를 격상시켜 드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하.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한 방안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차츰 확대하여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묘지안장, 이장지원, 묘비제작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 3 절 국가유공자의 재정 조달의 개선방안

#### 1. 세출예산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록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를 향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사회복지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순국하신 전몰군경유족은 물론 신체의 일부분을 전투에서 잃고 고생하시는 국가유공자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으로써 93년 기준 월 282,200원이 지급되는데 3인가족 495,000원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본다.

## 2. 기금예산

기금예산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진료비지원, 각종 대부사업, 군인보험금지급,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한성, 창훈실업(주), (주)태흥유업에서 열심히 일하여 많은 이익금을 공단에 출자하는데 예를 들어 (주)한성의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Ⅳ- 1〉 (주) 한성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86	'87	'88	'89	'90
매 출 액	16,215	25,433	34,533	39,755	52,220
단기순이익	608	1,587	514	161	2,679
자 본 증 식	54	87	14	38	1,472
보 훈 성 금	554	1,500	500	123	1,207

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30년」 1992, p.640

앞으로 더 많은 이익금의 재원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수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88골프장은 1,35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63억원은 각종 대부사업 재원으로 2억원은 과 국가유공자들의 재정적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나 더 많은 재원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수혜되어야 할 것이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16억원으로는 생계 보조금 1억원, 독립기념사

23) Ⅲ-2 '92년도 소득계층등급기준표

업 2억원, 보상사업 1억원 등이 사용되어졌으나 독립기념사업에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제 4 절 국가유공자의 행정지원체제의 개선방안

### 1. 국가보훈처

가. 국가유공자 가구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어 업무에 애로점이 많다. (남부지청관내 18,221가구, 북부지청관내 14,678가구) 그러므로 언젠가는 지청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예. 함양 1,370가구, 상주 1,532가구, 부여 1,603가구, 강진 2,088가구)

나. 93년도 94년도에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이 상당수 예상되어 많은 인원이 승진될 예정이다.

다. 내무부 산하 지방 공무원(읍 면사무소 계장직급이 지방6급)에 대하여 보훈지청 계장직급은 국가 7급으로 보훈업무 등 협조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계장직급을 국가 6급으로 직급 상승시켜서 기관간의 유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순환보직을 가장 잘 이행하는 곳이 총무처로 총무처는 2 - 3년간 주기로 보직을 변경시켜 주는 바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능률을 높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 민원업무 형평을 감안하여 사무기기의 보유대수가 차등 지급되었으면 한다.

바. 재향군인회 업무가 국방부에서 우리 처 업무로 이관되어 일선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자세히 업무분장이 요망된다.

## 2. 한국보훈복지공단

가. 보훈복지공단내 관리직 인사들이 상당수 외부에서 영입되어 자체내 승진이 어려워 사기가 저하될 시는 자체사규에 특별 형식으로 승진시키는 인센티브형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복지공단내 행정관리들과 병원기술관리분야의 업무가 다르므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입원대기환자의 누증은 부산병원의 증축, 조속한 대전병원의 신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외래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의 감면혜택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V 장 결 론

한국보훈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바탕 위에서 한국보훈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충해야 겠다. 이와 같은 복지시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확충 방향을 설정해 보겠다.

①보상금지급 수준향상과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보상금지급 체계를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금 급여체계로 개선할 것이며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겠다. 따라서 보상금 인상을 사회지표와 연계하여 인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매년 사회지표 상승률에 연동시켜 인상률을 결정하는 사회지표 연동제를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②전공상군경을 비롯한 유,가족 등 모든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확대

를 위해 전국적인 보훈의료체계망을 구축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진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훈의료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며 최신 첨단장비의 확보 및 재활의료사업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③취학자녀의 면학지원과 긍지함양을 위해선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진학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또한 보훈장학제도를 확충함과 동시에 취학자녀의 건전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겠다.

④취업알선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지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취업자원관리의 전산화 등으로 직업훈련업무의 과학화를 추진하며 취업정보의 적기제공으로 자력취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취업보호 실시기관의 범위와 고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종확보 방법과 고용명령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하겠다.

⑤보훈대상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며, 주택공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수준에 적합한 주택지원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로서의 전략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⑥보훈대상자에 대한 자활자립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각종의 대부재원을 확충하여 대부자금의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부경쟁율을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하며, 대부한도액을 적정 수준까지 인상함과 동시에 대부이율도 인하하는 등 대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다.

둘째, 제대군인지원업무를 체계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①장기간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군생활에 전념하다가 사회에 복귀하는 제

대군인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사회정착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에서 잘 훈련된 유용한 인력을 경제사회발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과 제대군인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겠다.

②제대군인들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직업보도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주택 및 자녀교육과 의료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창군 및 6.25참전자 등 특수공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군필자를 우대함  
으로 공지 제고 및 영예 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군인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약정보험금 지급으로 보험보장성을 보강하고  
군인보험자금 재원을 확충하여 대부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보훈기념사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①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해외에 안장된 순  
국선열의 유해봉환과 해외 사적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해외독립 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초청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자존 및 공동체의식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공훈선양을 통한 보훈이념을 확산하기 위하여 각종 보훈행사(3.1절 기념  
행사, 4.13임시정부수립기념행사일, 4.19기념행사, 현충일행사, 광복절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③민족정기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나라의 표상인 태극기에 대하여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함과 아울러 게양일과  
게양방법, 보관요령 등의 홍보와 국기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며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급기관, 단체의 각종 행사에 “무궁화 리본”  
을 패용토록 권장하는 등 태극기와 무궁화 사랑을 통한 나라사랑운동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④국가유공자 모두가 존경받는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유공자 사망시에는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함과 동시에 묘비 제작을 지원하고, 초라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권장하며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모든 전공상군경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시·도별로 국립묘지를 확보하여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수립,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 부터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겠으며, 유공자의 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들의 구제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부록)

## 1.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

구 분	요 건
순 국 선 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부터 1945.8.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
애 국 지 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부터 1945.8.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
전 물 군 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0.12.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포함)
전 상 군 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12.31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포함)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무공보국수훈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
6.25참전 재일 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6.25 부터 1953.7.27 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

4.19의거 사망자	1960.4.19을 전후한 의거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19의거 상이자	1960.4.19을 전후한 의거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순 직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공 상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

	자로 결정된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특별공로순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부록)

2.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표

사상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내 용
전몰. 전상	1 - 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1 - 2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된 전역전의 사망
순직 . 공상	2 - 1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 또는 상이
- 2 - 2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4 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출장 또는 공용 기간 중의 매식 포함)
- 2 - 5 영내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출장 또는 공용 기간의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포함)
- 2 - 6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 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7 출, 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9 전속, 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 2 - 10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 11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 진작 등의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 12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 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
	2 - 14	기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부록)

3.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구 분	인 정 또는 제한 사항
배 우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li> <li>○ 국가유공자와 친족관계소멸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li> </ul> 제외

<p>자녀 및 순국선 열 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출가 하지 아니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양자인 손자녀 포함) 인정범위</li> <li>-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자 1인에 한함. (동성동본 불문)</li> <li>- 단,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양자는 1945. 8. 14 이전 에 입양한 자 중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국한.</li> <li>* 양자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li> <li>. 출가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li> <li>.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li> <li>.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양자로서 1945. 8. 15 이후 에 입양한 자 중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자</li> </ul> </li> </ul>
<p>부 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의 배우자」인정</li> <li>-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 칭 변경</li> <li>- 국가유공자를 양육하였거나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함.</li> <li>- 생모가 따로 있을 때에는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 한 자 1인만 인정</li> </ul>
<p>성년남자인 직 계비속이 없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li> <li>-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li> </ul>

<p>조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li> <li>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포함</li> <li>방위병으로 소집된 자 포함</li> <li>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전투경찰대원) 및 제6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해당되는 자 포함</li> </ul>
<p>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부모의 경우와 동일</li> </ul>
<p>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자부로서 1945년 8.14일 이전에 입적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li> <li>- 출가한 자녀나 손자녀에 우선</li> <li>-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호주 승계인 손자녀에 우선</li> <li>- 순국선열이나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호주승계인이 아닌 손자녀에 우선</li> </ul>

자녀 및 순국 선열 . 애국지사 의 손자녀 증 출 가한 자	○ 친가가 무후인 가계에 한함
---	------------------

(부록) 4.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준용대상자

	구 분	보 호 내 용	근 거 법 규
제 대 군 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취업보호상 가점 혜택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2.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1일 이후 전역한 자	정착대부	
	3.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이 있는 자로서 1981년 4월 4일 이후 전역된 하사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취업보호 자녀교육보호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반	1950년 6월25일 부터 1953년 7월 23		
공	일 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		
포	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		
포	사위원회에서 반공포로상이자로 의		
	결된 자(공상군경에 준함)		국가유공자에
로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공상군경에	우등에관한법
	지지하다가 북한괴뢰집단을 지지하는	준한 보호	률
상	자로 부터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이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급 수	분 류 번 호	신 체 상 이 별
1 급 1 항	1	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거의식중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
1 급 2 항	1	홍복부장기의 부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2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되거나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이 전폐된 자로서 언어 및 청각 기능이 전폐된 자 또는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자
	5	1급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상이부위가 2개 이상인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 급 2 항	1	두눈이 실명되어 광각이 없는 자
	2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3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3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

		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1급	1	두눈이 실명된 자(광각이 있는 자
3항	3	현저한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7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 다리가 상실 또는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10	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11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63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66	하반신 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68	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 각각 상실된 자
	501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3항에 해당되는 자
2급	97	음식물을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98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99	한팔이 어깨관절 이상 상실된 자
	14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 상실된 자

	100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또는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
	101	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전 혀 불가능한 자
	102	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된 자
	103	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 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104	한다리가 고관절 이상 상실된 자
	105	한팔이나 한다리가 팔꿈치 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 되고 다른팔과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79	두다리 중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발이 상 실된 자
	502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 해당하는 자
3급	2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
	5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
	13	한팔이 팔꿈치 관절 이상 상실된 자
	15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자 또는 두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인 자
	17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8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 애가 있는 자
	19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0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2	한팔과 한다리가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3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4	두팔이 팔꿈치 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급	27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31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3	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72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쪽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8	한팔이 팔꿈치 이하에서 상실되고 한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1	두팔이 상실되고 한팔의 팔꿈치 관절 이하가 상실된 자
	82	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83	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
	84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88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
	89	한다리의 고도 기능장애와 같은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503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
4 급	1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경미한 노무에도 어려움이 많은 자
	107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공동생활에 제한이 있는 자
	108	한팔이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109	한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하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110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고 시야 위축이 중심 각도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111	한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2	한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3	신경학적 시상 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4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504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
5 급	21	뇌골 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25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6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8	한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9	한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1	두발이 상실된 자
	45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73	한팔이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77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91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92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3	음식물을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94	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5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96	얼굴이 현저하게 변형되었거나 심한 추상이 있는 자
	505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
6 급	12	생식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1 항	35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6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8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7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이 상실된 자
	48	한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되거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
	115	한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이상에서 현저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16	한다리의 무릎관절 이하 또는 이상에서 현저한 근위축이 있

- 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 117 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18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심한 자
- 119 양쪽 발가락이 완전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120 한팔의 3대관절 중 2대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21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대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22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12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 124 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
- 125 한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26 한다리의 3개관절 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27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128 두눈의 시야협착이 심한 자
- 129 열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된 자
- 130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상실된 자
- 131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132 코가 손상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506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 1항에 해당하는 자

6 급 2 항	16	한팔의 팔꿈치 관절 이하 또는 이상에서 정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30	한다리의 무릎관절 이하 또는 이상에서 정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32	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4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 기능장애가 있는 자
	37	양쪽발가락이 불완전 상실된 자
	39	한팔의 3대관절 중 2대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40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대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42	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3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
	44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46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한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49	한쪽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상실된 자
	51	한눈이 광각만 있는 자
	52	한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5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54	한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55	언어장애가 있는 자	
56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 |    |  |
|----|--|
| 57 | 열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되거나 경직된 자 |
| 58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불완전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자             |
| 59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
| 60 | 양쪽발가락 중 다섯발가락 이상이 상실된 자                      |
| 61 | 두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 62 | 코가 손상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장애가 남아 있는 자                |
| 64 |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
| 65 |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
| 67 | 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
| 69 | 두팔의 팔꿈치관절이 90도 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                 |
| 70 | 두다리의 무릎관절이 90도 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                 |
| 71 | 늑골 6본 이상이 제거된 자                              |
| 74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                  |
| 75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                  |
| 76 |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          |
| 80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상실된 자                           |
| 85 | 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87 | 두귀가 상실된 자                                    |
| 88 |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이 경직된 자                          |
| 90 | 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                              |

(부록)

6. '93보상금 1인당 월지급액

(단위 : 천원)

대 상 구 분		'93 년도			92년도
		계	기 본 연 금	부 가 연 금	
애국 지사	1 - 3 등급	1,182.2	282.2	900	1,074
	4 등급	688.2	282.2	406	661
	5 등급	540.2	282.2	258	520
애국 지사 유족	1 - 3 등급처	587.2	282.2	305	565
	1-3등급 유족	518.2	282.2	236	499
	4등급 유족	424.2	282.2	142	409
	5등급 유족	334.2	282.2	52	324
상 이 군 경	1급 1항	654.2	282.2	372	628
	1급 2항	629.2	282.2	347	605
	1급 3항	604.2	282.2	322	581
	2 급	547.2	282.2	265	526

	3 급	519.2	282.2	237	500
	4 급	429.2	282.2	147	414
	5 급	349.2	282.2	67	338
	6급 1항	311.2	282.2	29	302
	6급 2항	282.2	282.2	-	274
	5 - 6급무의탁	402.2	282.2	120	388
상이	60세이상 고령	40	-	40	38
군경	전 상 자	7	-	7	7
	간호수당(1급)	480	-	-	400
	간호수당(2급)	180	-	-	150
전몰	(미 망 인)				
	무 의 탁	410.2	282.2	128	396
	60세이상 고령	363.2	282.2	81	351
	시부모 봉양	363.2	282.2	81	351
	일 반	290.2	282.2	8	282
군경	(부 모)				
유족	무 의 탁	402.2	282.2	120	388
	독 자 사 망	354.2	282.2	72	343
	65세이상 고령	322.2	282.2	40	312
	2 인 전 사	684.4	564.2	120	662

	3 인 전 사	966.6	846.2	120	936
	4 인 전 사	1,248.8	1,128.8	120	1,210
	일 반	282.2	282.2	-	274
	수권 유자녀	354.2	282.2	72	343
제일	무 의 탁	402.2	282.2	120	388
학도	고 령	322.2	282.2	40	312
의용	일 반	282.2	282.2	-	274
군인					

# 참 고 문 헌

## A. 국내서적

1. 국가보훈처, 「고엽제 관련규정」 1992.
2. —————, 「공무원대비표」 1993.
3. —————, 「국가보훈정책」 1988.
4. —————, 「국가보훈법령집」 1992.
5. —————, 「국가보훈대상자 사회지표」 1989.
6.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지침」 1992.
7. —————, 「국가유공자 사회지표」 1988.
8. —————, 「국가보훈대상자 표본조사 분석보고서」 1992.
9. —————, 「대한민국유공인물론」 1992.
10.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1993.
11. —————, 「독립유공자공훈록(제1권 - 제9권)」 1991.
12. —————, 「보훈사업개요」 1993.
13. —————, 「보훈30년사」 한국보훈복지공단 신생인쇄조합 1992.
14. —————, 「세입세출예산서」 1993.
15. —————, 「주요업무계획 시행지침」 1993.
16. —————, 「한국독립운동사」 1993.
17. 김석준, “정책의 성장촉진을 위한 통합기준의 모색” 지역개발논총 1980.
18. 김해동, 정홍익: 「사회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7.
19. 박동서, 「발전행정론」 법문사 1991.

Implementa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0.

13. Titmuss Richard M., Social Policy : An Introduction, London : Allen and Unwin, 1974.

14. Walker Alan, Social Planning, Oxford : Basil Blackwell, 1984.

15. Wilensky Harold & Chales Lebeaux,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Y. : Free Press, 1965.

16. Wilensky Harold, The Welfare Stste and Equality, Berkeley : Univesity of Califonia Press, 1975.

# A B S T R A C T

## A Study on Development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in Korea

HWANG, BUMTAEK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WANG, JINSOO

This Study aims at intensive analyses, evaluation and prediction of welfare system for patriots and veterans who have been recognized for the country, particularly in times of emergency or crisis. Military Relief Administration was set up in 1961, following the numerous trials and errors in the course of making implementations for the purpose by several ministries. The organization was expanded to Veterans Administration the next year. The Administration was upgraded to the ministerial level in 1985.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following categories.

First, The definite scope of eligibility for patriots and veterans

and other beneficiaries should be increased, and thus followed by the corresponding range of benefits for them.

Secondly, the benefits should be in match with the living expenses considering real inflation of price.

Thirdly, the system on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should be streamlined into one organization for optimum effect.

Most of the dissertations on the policy made public in the past and personal practical experiences for the past 23 years at the head office of the ministry and its subordinate offices around the country are used for thi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y. The discussion or consulta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civil servants are also made well use of for this thesis.

In the second chapt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ystem is produced from components inherent in the system. The analyses of the national and social policies are based on the evaluation analysis made by Neil Gilbert and Harry Specht.

The third chapter overviews the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ystem, raises questions arising from it, and enumerates various factors on scope, eligibility, method, financial sources, administrative system for patriots and veterans to be corrected.

Chaper four presents better system that demands the honoress to deserve thire achievements well treated in the honorable way and to hand down the benefits to next descendants or the one after. The vocational assistance helps them make a living, by giving them or thire bereaved families one-time privilege to be employed before the age of 55.

From the eveventh of May, 1993, the Agent Orange victims are equal to other honorees in the sense of benefits. While the other alleged victims are free to be given medical tretments on the disease in accordance with law on treatment for alleged victims of Agent Orange and its subsequent order. The presidential certificate of honoree is presented to every distinguished honoree from June, 1993, to pave the way for enhancement of his or her achievement and status.

In the final chapter, the first priority ensures honorable guarantee to all the honorees. Secondly, veterans other than beneficial honorees should be assisted for their living by the systemization of various aids. Lastly, memorial or celebrating ceremonies should be in agreement with awareness of the descendants for national defense and patriotism of precious heritages based on their life or death activities for the causes.